

2022년 영동군 종합감사 결과



충 청 북 도
감 사 관 실

2022년 영동군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2. 5. 19. ~ 5. 27.(7일간)
 - ※ 건설현장 특정감사 6.16. ~ 6.24
- 감사범위 : ‘19. 4월 이후 추진업무
- 감사중점 : 위임사무, 국·도비 보조사업, 법령위반 자치사무 등
- 감 사 단 : 감사단장, 4팀 17명
-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77건(본처분 54건 + 현지처분 23)
 - 징계 2건 (5명/ 경징계 5) ※ 훈계 20명
 - 시정 28건 (재정상 82,609천원/ 추정 71,974, 회수 10,635)
 - 주의 24건
 - ※ 현지처분 : 23건(주의 9, 시정 12, 개선 2)
- 적극행정 지원 현장 사전컨설팅감사 : 11건
- 도민감사관 간담회 및 주요현장 점검
 - 5. 19./ 마산 자연재해위험지구 현장점검
 - 감사의견 청취, 주민불편이 없는 공사 진행과 안전사고 예방 건의



- 수감결과 우수공무원 표창(계획) : 7명(훈격 도지사)

2 감사총평

○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현지조치 23건을 포함하여 총 77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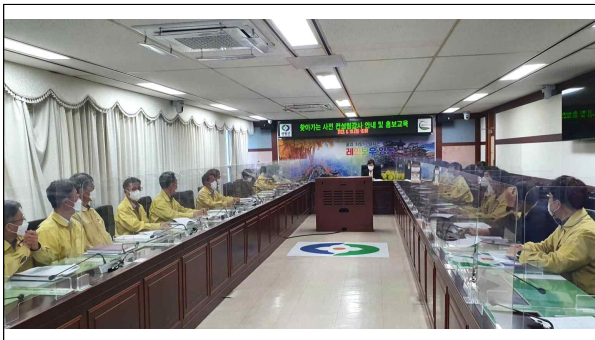
- 본처분 54건 → ‘19년 감사대비 처분 1건 감소
 현지처분 18건 감소(‘19년 현지처분 41건)
- 재정상 조치는 83백만원 → ‘19년 감사대비 623백만원 감소
- 징계처분 5명 → ‘19년 감사대비 징계 5명 증가
- 훈계처분 20명 → ‘19년 감사대비 10명 감소

2019년 영동군 종합감사 결과

- ▶ 행정상 조치 : 55건(고발1, 주의 17, 시정 34, 개선·권고 3)
- ▶ 재정상 조치 : 706백만원
(추징 250백만원, 회수 269백만원, 감액 137백만원, 기타 50백만원)
- ▶ 신분상 조치 : 14건 30명(훈계 30)
- ▶ 현지처분 41건(주의 25, 시정 15, 통보 1)

○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감사로 진행

- 현장에서 사전컨설팅 감사 11건을 신청 받아 one-stop 처리
 〈사전 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면책 교육 및 홍보〉



- ▷ ‘22. 5. 10.(화)/ 영동군 회의실
- ▷ 실과 주무팀장 등 20명 참석
- ▷ 사전 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 질의답변 등

○ 시군 감사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감사반원 감축(‘19년 21명→ ‘22년 17명), 코로나19 관련부서에 대한 대면감사 축소

○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수집, 메신저·전화·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감사를 원칙으로 진행

3 처분요구 내용

1 처분요구목록

번호	처분제목	처분내용		비 고
1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인사운영 부적정	징계	경징계 1, 훈계 1	
2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	주의	-	
3	무단방치차량 업무처리 소홀	시정	-	
4	운수종사자 교육이수관련 행정처분 소홀	시정	-	
5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행정조치 미이행 등 업무소홀	주의	-	
6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등 업무 소홀	시정	-	
7	소규모 신고체육시설업자 자율안전점검 미실시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주의	-	
8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건설기계 행정처분 소홀	시정	훈계 1	
9	민원사무편람 작성 및 현행화 소홀	시정	-	
10	정보화사업(HW, SW) 유지관리비 산정 부적정	주의	-	
11	야영장업 안전위생시설 지원사업 중요재산 미공시 등 관리소홀	시정	-	
12	야영장업 시설 안전점검 미실시 등 관리소홀	시정	-	
13	물수 마약류 폐기처분대장 미작성 등 관리 소홀	시정	훈계 2	
14	소비자식품감시원 단독출입신청서 미발급 등 운영소홀	주의	-	
15	공공사업 추진 시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 미이행	주의	-	
16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소홀	시정	-	
17	주말체험농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소홀	시정	-	
18	농업기술인 전문경영과정 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의	-	
19	산림사업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및 안전관리 계획 관리 소홀	주의	-	
20	임도설치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소홀	시정	-	

번호	처분제목	처분내용		비 고
21	입목벌채지 임산물 운반로 사후관리 소홀	시정		
22	산림사업 하자검사 미이행	주의		
23	축산물 영업자 정기점검 및 위생교육 지도감독 소홀	시정		
24	기능이 상실된 초지에 대한 초지해제 미이행	시정		
25	파견자(30일 이상) 수당 과다 지급 등 업무소홀	시정	회수 (8,708천원)	
26	보조사업 정산 관련 외부감사인 미검증 등 업무소홀	주의		
27	수의계약 업무추진 소홀	주의	훈계 6	
28	전기공사 시공업체 선정 소홀	주의	훈계 1	
29	보조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등 업무추진 소홀	시정	훈계 1	
30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추진 소홀	주의		
31	문화분야 민간위탁사무 감사 미실시 등 업무추진 소홀	시정		
32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직권부과 누락	시정	추징 (122건/ 53,362천원)	
33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징 누락	시정	추징 (13건/ 18,612천원)	
34	영동&&&& 예산 집행 관리 소홀	주의		
35	어린이집 종사자 4대보험료 납부 관리 소홀	시정	회수 (1,928천원)	
36	장애인 자동차 공동소유주 세대분리 확인업무 소홀	주의		
37	영동군***** 비지정후원금 집행 관리 소홀	주의		
38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조직 인원 미배치 등 업무 소홀	시정		
39	2022년 ○○○ 안전관리계획 수립업무 소홀	주의		
40	재해영향평가 협의 지연처리 등 업무 소	주의		

번호	처분제목	처분내용		비 고
41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미공고	시정		
42	일상감사 대상사업의 일상감사 미실시 등 업무 소홀	주의		
4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해제 업무 소홀	시정		
44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소홀	주의	훈계 1	
45	폐수배출업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기준적용 소홀	주의		
4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업무 소홀	주의		
4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연간 점검계획 미 수립 등 관리 소홀	시정		
48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관리 소홀	시정		
49	주거용 도.군유재산 사용료 과소 부과 등	주의		
50	치매전담요양시설 건립공사 바닥 콘크리트 균열 발생 등 공사관리 소홀	시정		
51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소홀	시정		
52	○○○○자료전시관 해체공사감리자 배치 소홀	주의		
53	○○○○체육센터 건립사업 상주감리 배치 소홀	시정		
54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자재·기성검사 등 공사 관리 부적정	징계	경징계 4, 훈계 7	

처 분 요 구 서(1)

징 계 요 구

제 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인사운영 부적정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과

내 용

영동군 행정과는 임기제공무원 등 채용 및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영동군 제○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사업전담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명을 채용하였다.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부적정

(1) 과도한 자격기준 제한으로 응시기회 박탈

가.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 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¹⁾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

1)법 제27조제2항

제2호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3호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
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제9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7조제8항 별표6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임용등급	자격기준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임용 등급	자격기준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동군 제○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임용분야 중 □□사업전담분야의 선발예정인원,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표1>

위 표1과 같이 영동군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 상당)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자격요건으로 □□업무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공고하였다.

그런데, 9급 상당인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자격기준은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동군은 6급 상단에 해당하는 나급 공무원 채용 기준인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로 인해 영동군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응시자가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면접시험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등

가.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면접시험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에 따른 시험위원의 구성방법은 서류전형을 포함한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며,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공정채용가이드북(2019년)에는 시험위원 위촉 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시험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당해 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당해 기관 퇴직자, 3년 이내 타부서 전출자 및 파견자, 산하기관 근무자, 채용직위·직무관련 기관 용역·사업 수행자는 현 직위와 관계없이 내부위원으로 본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① 서류전형 시험위원 미위촉 및 내부위원 3분의 2이상 위촉

영동군은 제○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시 시험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검토를 인사담당자가 하고 검토 결과를 인사담당자, 행정팀장, 행정과장, 부군수 전결로 처리하여 합격자 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면접시험위원 5명 중 소속 공무원 2명을 포함한 영동군 퇴직자와 영동군 산하 기관인 영동군 △△△△ 사무국장을 면접시험 위원으로 위촉하여 5명 중 4명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를 위반하였다.

〈표2〉 면접시험위원 현황

② 근무경험관계자 시험위원 위촉 운영

제○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사업전담분야 응시자 및 합격자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사업전담분야 채용공고에 대한 응시자 중 4명은 영동군 □□□□ 근무경력자로 영동군은 면접시험위원 구성 시 응시자와 근무경력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험위원을 위촉·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영동군에서는 응시자와 근무경력 관계가 있는 □□□□ ○○○○○○ 과장 ▲▲▲을 면접시험으로 위촉하였다.

또한, 영동군이 시험위원에게 징구한 서약서의 회피절차에는 ‘응시자와의 특별한 관계(본인자녀, 친척 등)가 있을 때에는 해당자에 대한 면접을 기피하고 이를 시험 책임관에게 통보하겠음’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에 따른 시험위원이 회피해야 할 응시자와의 관계 중 ‘근무경험 관계’를 누락한 서약서를 징구하였으며, 시험 전 시험위원에게 회피 사항을 별도로 안내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시험위원 서약서 회피 사항에 ‘근무경험 관계’를 누락함에 따라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 □□□□ ○○○○○○ 과장 ▲▲▲이 시험을 회피하지 않고 면접을 진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해당 응시자가 최종 합격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2.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가.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인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고,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하며,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
- 2)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제2항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 2의2.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
- 3.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 4.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 5.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 7.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 8.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① 자격이 없는 자 위촉 등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영동군은 인사위원회 위원 8명을 정원으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위촉위원 4명, 공무원 임명직 2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영동군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제4호의 기준** 에 따라 지역단위 조직의 장을 아래와 같이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구분	위촉기간	해촉일	소속	성명
위촉직	2019.1.7. ~ 2022.1.6.	2021.1.20.)	영동군 ◇◇◇◇◇회장	○○○
위촉직	2021.2.5. ~ 2024.2.4.	-	영동군 ◆◆◆◆◆회장	■■■

영동군은 인사위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 위촉대상자가 속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여부와 10년이상 활동경력을 확인한 후 임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9.1.7. 위촉한 영동군◇◇◇◇◇회장 ○○○의 경우 영동군◇◇◇◇◇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단체로 인사위원회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자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회장 ■■■의 경우 감사 당일까지 민간단체 10년이상 활동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촉하는 등 인사위원 위촉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② 채용 등 중요사항 서면심의 등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영동군은 2019년 4월 이후 79건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중 62건을 서면심의로 의결하였다. 인사위원회 서면심의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만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영동군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	계	실질 심의 (건)	서면심의(건)				
			계	채용	전보 임용	명퇴수당 지급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	79	17	62	29	19	11	3
2019.4~	20	5	15	10	3	1	1
2020	19	3	16	6	5	4	1
2021	31	7	24	9	8	6	1
2022	9	2	7	4	3	-	-

그런데, 영동군에서는 2019. 4월 이후 인사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29건 전부를 서면심의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1. 위 ★★★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경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임기제공무원 등 채용업무, 인사위원회 운영 업무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2)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행정과

내 용

영동군 행정과는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하고 있다.

1.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4항에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영동군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면서 평정항목을 근무실적평정(50점) 및 직무수행능력평정(50점)으로 구분하고, 이 중 직무수행능력평정은 기획력(8점), 의사 전달력(6점), 협상력(6점), 추진력(5점), 신속성(5점), 팀워크(8점), 성실성 5점, 고객지향직무수행태도 (6점) 등 8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있다.

직무수행능력평정 요소 중 고객지향직무수행태도는 만점에서 감점항목 및 배점기준³⁾에 따라 감점처리하고 있으며, 감점대상이 없을 경우 만점을 부여하도록

3) 평정대상 기간 중 징계(1.5~3.0), 직위해제(2.0), 경고, 훈계 등(1.0~1.5), 무단결근 등 복무상태(0.2~0.5), 지시사항 불이행(0.3~0.5)의 감점항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항목 만점 점수에서 감점처리

되어 있다.

영동군 행정과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을 위해 근무성적 감점대상 공무원 명단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평정자는 감점대상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 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동군은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정기평정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상반기 6월 30일과 하반기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영동군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항목 중 고객지향직무수행태도에 대한 감점 처리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고객지향직무수행태도 감점내역

구분	감점자	감점처리 부적정 현황		
		계	감점 미대상자 감점	감점 대상자 미감점
계	100명	25명	23명	2명
2019 하반기	36	5	3	2 (불문경고 2명)
2020 상반기	25	-	-	-
2020 하반기	19	7	7	-
2021 상반기	5	-	-	-
2021 하반기	15	13	13	-

표1과 같이 근무성적평정 계획에 따라 직무수행태도 감점은 각 항목의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해야 함에도 감점 기준과 다르게 감점 미대상자를 감점 처리한 사례가 23명, 감점 대상자를 미감점한 사례가 2명으로 총 25명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런데, 근무성적평정 주관부서인 행정과에서는 각 평정자가 근무성적평정 감점처리를 적절히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향후, 근무성적평정 업무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3)

시 정 요 구

감사자 : ○ ○ ○

제 목 무단방치차량 업무처리 소홀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과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3>에 따르면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는 범칙행위로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30만원 범칙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100~150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동군에서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자진처리 명령을 한 후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처리 후 관련법령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 해당 주소지 관할기관 이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럼에도 영동군 ○○○○과에서는 아래현황<표1>과 같이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17대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⁴⁾및 주소지 이첩 등의 행정처분을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며, 2021.7.13일 이후 접수된 차량 5대에 대하여는 견인 및 자진처리 명령을 감사기간 중 지연 처리하는 등 무단방치차량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1> 2019~202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현황

연번	차량번호	접수일	견인일	자진처리명령일		폐차일	비고 (후속조치등)
				1차	2차		
1	○○○○○○○	2019.6.27.	2019.8.6.	2019.8.13.	2019.10.17.	2020.01.07.	범칙금미부과
2	○○○○○○○	2019.6.27.	2019.8.6.	2019.8.13.	2019.10.17.	2020.01.07.	범칙금미부과
3	○○○○○○○	2019.6.27.	2019.8.6.	2019.8.13.	2019.8.27.	2019.09.03.	범칙금미부과
4	○○○○○○○	2019.11.15.	2019.12.20.	2020.1.8.	2020.2.10.	2020.04.04.	범칙금미부과
5	○○○○○○○	2020.7.20.	2020.9.7.	2020.9.9.	2020.11.4.	2021.7.12.	주소지 미이첩
6	○○○○○○○	2020.8.6.	2020.9.7.	2020.9.9.	2020.11.4.	2021.2.18.	범칙금미부과
7	○○○○○○○	2020.8.31.	2020.9.29.	2020.11.4.	2021.4.28.	2021.7.13.	범칙금미부과
8	○○○○○○○	2020.9.15.	2021.1.5.	2021.2.18.	2021.4.28.	2021.7.13.	범칙금미부과
9	○○○○○○○	2020.11.19.	2020.12.18.	2021.2.18.	2021.4.28.	2021.10.22.	주소지 미이첩
10	○○○○○○○	2020.11.23.	2021.3.10.	2021.3.24.	2021.4.28.	2021.7.13.	범칙금미부과
11	○○○○○○○	2021.1.8.	2021.3.10.	2021.3.24.	2021.4.28.	2021.7.14.	주소지 미이첩
12	○○○○○○○	2021.1.8.	2021.3.10.	2021.3.24.	2021.4.28.	2021.7.15.	주소지 미이첩
13	○○○○○○○	2021.1.19.	2021.3.10.	2021.3.24.	2021.4.28.	2021.7.15.	주소지 미이첩
14	○○○○○○○	2021.3.19.	2021.4.26.	2021.10.15.	2021.12.9.	2022.3.15.	주소지 미이첩
15	○○○○○○○	2021.4.1.	2021.4.26.	2021.10.15.	2021.12.9.	2022.3.15.	주소지 미이첩
16	○○○○○○○	2021.4.19.	2021.6.15.	2021.10.15.	2021.12.9.	2022.3.15.	주소지 미이첩
17	○○○○○○○	2021.7.5.	2021.9.2.	2021.10.15.	2021.12.9.	2022.3.15.	범칙금미부과
18	○○○○○○○	2021.7.13.	2022.4.4.	2022.5.20.			자진처리 명령(5.20)
19	○○○○○○○	2021.9.5.	2022.4.4.	2022.5.20.			자진처리 명령(5.20)

4) 범칙금 통고처분 : 무단방치(자진처리명령 불응)-승용차 100만원, 소형화물 100만원, 중대형화물 150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3)

20	○○○○○○○	2021.10.14.	2022.5.20.				견인(5.20)
21	○○○○○○○	2021.12.3.	2022.5.20.				견인(5.20)
22	○○○○○○○	2021.12.15.	2022.5.20.				견인(5.20)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영동군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 및 해당주소지 관할기관 이첩 등 조속히 조치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범칙금 통고처분,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이첩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업무를 지연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4)

시 정 요 구

감사자 : ○ ○ ○

제 목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이수관련 행정처분 소홀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과에서는 관내 운수종사자 교육이수 관련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 사업의 일부정지 및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이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위와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여객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 제23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동군에서는 법정(보수)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교통안전성 확보라는 공익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영동군에서는 아래 현황<표1>과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수교육 이수대상자 559명 중 51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였다.

<표 1>영동군 최근 3년간 운수종사자 교육(보수) 추진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교육대상 인 원	교육이수 인 원	교육미이수 인 원	행정처분 건수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비고 (미이수 현황)
계	559	508	51	0	여객 : 15 화물 : 36
2019년	199	167	32	0	여객 : 13 화물 : 19
2020년	175	160	15	0	여객 : 2 화물 : 13
2021년	185	181	4	0	여객 : 0 화물 : 4

<표 2>교육 미이수 세부현황

연번	연도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여부	비 고
1	2019년	(주)○○○○관광	○○○	부	여객
2	2019년	(주)○○○○관광	○○○	부	여객

3	2019년	(주)○○○○○관광	○○○	부	여객
4	2019년	(주)○○○○○관광	○○○	부	여객
5	2019년	(주)○○○○○관광	○○○	부	여객
6	2019년	(주)○○○○○관광	○○○	부	여객
7	2019년	(주)○○○○○관광	○○○	부	여객
8	2019년	(주)○○○○○관광	○○○	부	여객
9	2019년	(주)○○○○○관광	○○○	부	여객
10	2019년	(주)○○○○○관광	○○○	부	여객
11	2019년	○○택시	○○○	부	여객
12	2019년	○○택시	○○○	부	여객
13	2019년	○○택시	○○○	부	여객
14	2019년		○○○	부	화물(개별)
15	2019년		○○○	부	화물(개별)
16	2019년		○○○	부	화물(개별)
17	2019년		○○○	부	화물(개별)
18	2019년		○○○	부	화물(개별)
19	2019년		○○○	부	화물(개별)
20	2019년		○○○	부	화물(개별)
21	2019년		○○○	부	화물(개별)
22	2019년		○○○	부	화물(개별)
23	2019년		○○○	부	화물(개별)
24	2019년		○○○	부	화물(개별)
25	2019년		○○○	부	화물(용달)
26	2019년		○○○	부	화물(용달)
27	2019년		○○○	부	화물(용달)
28	2019년		○○○	부	화물(용달)
29	2019년		○○○	부	화물(용달)
30	2019년		○○○	부	화물(용달)
31	2019년		○○○	부	화물(용달)
32	2019년		○○○	부	화물(용달)
33	2020년	○○○○○택시	○○○	부	여객
34	2020년		○○○	부	여객(개인택시)
35	2020년		○○○	부	화물(개별)
36	2020년		○○○	부	화물(개별)
37	2020년		○○○	부	화물(개별)
38	2020년		○○○	부	화물(개별)
39	2020년		○○○	부	화물(개별)
40	2020년		○○○	부	화물(개별)
41	2020년		○○○	부	화물(개별)
42	2020년		○○○	부	화물(용달)
43	2020년		○○○	부	화물(용달)
44	2020년		○○○	부	화물(용달)
45	2020년		○○○	부	화물(용달)
46	2020년		○○○	부	화물(용달)

47	2020년		○○○	부	화물(용달)
48	2021년		○○○	부	화물(용달)
49	2021년		○○○	부	화물(용달)
50	2021년		○○○	부	화물(개별)
51	2021년		○○○	부	화물(개별)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영동군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관계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와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5)

주 의 요 구

감사자 : ○ ○ ○

제 목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행정조치 미이행 등 업무소홀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과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을 하는 등 승강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강기가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제2항 제7호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제3항 제4호에는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동군에서는 아래 현황<표1>과 같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운행정지 명령 대상 승강기로 통보받은 80대의 승강기 중 12대에 대해서만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으며, 68대의 승강기에 대하여는 운행정지 명령을 하지 않고 구두로만 조치하였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을 한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운행정지 표지 부착 및 불법 운행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어야 하나, 운행정지 명령 대상 승강기 80대의 불법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운행정지 승강기 현황

연도	①운행정지명령 (구두조치)	②불법운행 여부확인	③현재 운행여부					
			운행(추가 조치기간)				폐지	운행 정지
			계	(30일 이내)	(60일 초과)	(1년 초과)		
계	12건 (68)	0	80	60	14			6
2019.4~	4건 (22)	0	26	22	3			1
2020	4건 (15)	0	19	14	3			2
2021	4건 (27)	0	31	22	7			2
~2022.4	0건 (4)	0	4	2	1			1

- ① 정기검사지연, 검사불합격 등으로 운행정지 명령 승강기 현황
- ②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운행정지표착 및 운행여부 확인 현황
- ③ 추가조치로 검사 합격하여 운행하거나, 폐지, 현재까지 운행정지 승강기 현황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영동군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운행정지명령 대상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시스템(국가승강기정보센터)을 상시 확인하여 미조치 된 건에 대해서만 조치하였으나, 향후에는 운행정지명령 대상 승강기 현황을 통보 받은 후 즉시 해당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행정처분(운행정지) 조치하고 승강기 불법 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승강기 안전 확보와 지속적 업무 연찬에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 미이행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및 불법 운행여부 확인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6)

시 정 요 구

감사자 : ○ ○ ○

제 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등 업무 소홀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과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및 지정취소 등 담배소매인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17조에 따르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동군 과에서는 아래 현황과 같이 담배 소매인 153개 업소를 관리하면서 폐업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90일 이상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90일이상 매입하지 아니한 20개 업소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담배소매인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소매인 지정 및 담배 매입현황

(단위 : 개소)

소매인 지정 현황	담배매입현황		비 고
	정상매입	90일이상 미 매입	
153	133	20	

※ KT&G옥천지사 제공자료(2022. 5월)

<표 2> 소매인 지정 및 담배 매입 세부내역(90일이상 담배 미매입 현황)

연번	대표자	업소명	최종매입일	행정처분	비 고
1	○○○	○○○○○○점	2021.01	부	
2	○○○	○○○○마트	2021.07	부	
3	○○○	○○○○장	2021.01	부	
4	○○○	○○상회	2021.01	부	
5	○○○	○○○○민박	2021.01	부	
6	○○○	○○○○○집	2021.01	부	
7	○○○	○○상회	2021.01	부	
8	○○○	○○상회	2021.01	부	
9	○○○	○○마트	2021.01	부	
10	○○○	○○○○	2021.02	부	
11	○○○	○○○점	2021.02	부	
12	○○○	○○○○마트	2021.03	부	
13	○○○	○○○○슈퍼	2021.04	부	
14	○○○	○○○○마트	2021.05	부	
15	○○○	○○상회	2015.08.	부	
16	○○○	○○상회	2021.05	부	
17	○○○	○○슈퍼	2021.07	부	
18	○○○	○○○○○점	2021.10	부	
19	○○○	○○○	2021.10	부	
20	○○○	○○상회	2022.01	부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영동군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매월 KT&G에서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 업소 현황자료를 요구하여 해당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지정취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을 통해 담배소매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관내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소매인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등 검토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7)

주 의 요 구

감사자 : ○ ○ ○

제 목 소규모 신고체육시설업자 자율안전점검 미실시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과에서는 소규모 신고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가 자율안전점검 및 결과보고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4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데, 영 제2조의5제3항에서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⁵⁾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5)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등

또한, 영 제2조의3제3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등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고시된 문화체육부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⁶⁾」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경우, 연면적에 상관없이 자율점검시설로 하는데, 자율점검시설은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안전관리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체육시설알리미)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 제2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등록 및 상급기관 보고 조치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동군에서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체육시설법」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에의 이행)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에 따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동군 ○○○○○○과에서는 아래 현황<표1>과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관내 소규모 신고체육시설의 자율안전점검 실시율이 현저히 낮음에도 안내와 독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등 소규모 신고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6) 2020. 12. 2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65호로 일부개정 시행된 것을 말함.

〈표1〉 소규모 신고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 실시현황

연도(반기)		점검대상 (신고업체수)	실 시	미실시	점검율	비 고
2019년	상 반 기	30	26	4	86.7%	양호 26
	하 반 기	30	25	5	83.3%	양호 25
2020년	상 반 기	32	5	27	15.6%	양호 5
	하 반 기	35	30	5	85.7%	양호 30
2021년	상 반 기	30	18	12	60.0%	양호 18
	하 반 기	32	8	24	25.0%	양호 8

※ 자료출처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의견없음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자율점검이행 및 보고 완료토록 조치하는 등 안전 점검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8)

시 정 요 구

감사자 : ○ ○ ○

제 목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건설기계 행정처분 등 업무소홀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과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 안전도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등을 받도록 지도하고, 미검사 기계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검사를 신청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관청은 법 제44조제3항 제6호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경과 후에는 매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4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동군에서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게 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건설기계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동군에서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래 현황<표1>과 같이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설기계 110대에 대해 18건(과태료 3, 최고15)만 행정처분 하였고, 92대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건설기계 행정처분 현황

(단위 : 대)

연 도	대상기계	처분현황		미처리*	비고
		과태료부과	직권말소 (최고포함)		
계	110	3	15	92	
2019.4~	18	1	5	12	
2020	34	0	6	28	
2021	33	0	1	32	
~2022.4	25	2	3	20	

* 미처리 : 과태료 부과, 직권말소(예고) 등을 하지 않은 건설기계 현황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영동군에서는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안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고, 조속히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건설기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분상 처분

1. 대상자 ○○○○과 ○○○○○○○○ ○○○
2. 종 류 훈계
3. 사 유

○○○은 건설기계 업무담당자로 건설기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

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 ① 위 사람에 대하여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 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행정처분하여 주시고, 최고 통지 기한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직권말소 등을 검토하여 행정처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9)

시 정 요 구

제 목 민원사무편람 작성 및 현행화 소홀
소관기관 읍·면·군
조치부서 상 우과
내 용

1. 업무개요

상 우군(읍·면·군)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21.10.21.)」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읍·면·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21.10.21.)」 제1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0.21.)」 제10조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람에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기관·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⁷⁾)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Ⅲ. 분야별 추진내용 5. 정확한 민원 정보 ③ 민원정보 편의성 향상에서는 법령 개정, 시책추진 등에 따른 민원정보 변동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원편람 등 수시 현행화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7)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우군(♫)에서는 다음의 <표1>과 같이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사무편람의 신규작성과 현행화를 위한 일제정비를 20**년부터 20**년까지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20**년, 20**년은 일제정비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군 민원사무편람 확인 결과 <표2>와 같이 현행 편람에는 **개의 민원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20**. 1. 1. ~ 20**. 4. 3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의 종류는 ***개로 확인된바 민원사무편람 작성에 소홀함이 있었다.

또한, 민원사무편람에는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을 포함하여야 하나 <표2>와 같이 현행 편람에는 **개의 민원신청 서식을 포함하고 있는 등 민원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표 1> 민원사무편람 일제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 현황

연도	계획 수립일	최종 정비일	비고
20**	-	-	
20**	-	-	
20**	20**. *. **.	2021. *. **.	
20**	20**. *. **.	2022. *. **.	

<표 2> ♫군 민원사무 편람(홈페이지 게시) 현황

(단위: 개)

연번	부서명	홈페이지 게시 민원사무편람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 종류 (**1.1.~**4.30.)	홈페이지 첨부 민원신청 서식	비고
	합계	*	*	*	
1	○○○○○○과	*	*	*	
2	○○○○과	*	*	*	
3	○○○○과	*	*	*	
4	○○과	*	*	*	
5	○○과	*	*	*	
6	○○과	*	*	*	
7	○○과	*	*	*	
8	○○과	*	*	*	
9	○○과	*	*	*	
10	○○○○과	*	*	*	
11	○○○○과	*	*	*	
12	○○○○과	*	*	*	
13	○○○	*	*	*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군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우과)는 향후 새울행정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의 종류를 파악하여 ☞☞군 홈페이지에 미게시된 민원사무 편람을 게시하시고, 주기적으로 현행화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10)

주 의 요 구

제 목 정보화사업(HW, SW) 유지관리비 산정 부적정
소관기관 ☎군
조치부서 ⬆우과, ☆☎十丰과
내 용

1. 업무개요

⬆우군(☎과, ☆☎十丰과)에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유지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021.1.19.)」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 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Ⅳ. SW사업 운영단계 2.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부문에 따라 **응용 SW 유지관리비**를 산정 할 경우 적용하는 **요율제 관리비 방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요율제 유지관리비} = \text{유지관리대상 소프트웨어의 계약시점에 재산정된 개발비(상세한 절차는 Ⅲ장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법을 참고)} \\ \times \text{유지관리 요율}(10\sim15\%)^8 + \text{직접경비}$$

8) 유지관리 요율은 난이도(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수, 시스템 중요도, 타시스템 연계, 오류복구 신속성) 산정을 위한 평가표(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표4-4)를 적용, 총점수를 이용하여 결정

〈표 1〉 효율제 유지관리비(응용 SW) 산정내역 산출물 양식

효율제 유지관리비 산정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				
난이도 산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특성	판단기준	복잡도	점수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수			
	시스템 중요도			
	타시스템 연계			
	오류복구 신속성			
	총 유지관리 점수			
유지관리 요율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2.1.13.)」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 이행기간 · 수급상황 · 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우군(☞☞과)에서는 다음의 <표2>와 같이 정보화사업(SW) 유지관리 사업비를 산정하면서 효율제 관리비(응용 SW) 산정 방식에 따라 재산정된 소프트웨어 개발비, 유지관리 요율, 직접경비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했음에도 견적서만을 토대로 정보화사업(SW)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우군(☞☞과)에서는 다음의 <표2>와 같이 적정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유지관리 요율, 직접경비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했음에도 견적서만을 토대로 정보화사업(HW)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우군 정보화사업(HW, SW) 유지관리 용역계약 사업비 산정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부서명	유지관리 계약명(업체명)	계약 금액	재산정 소프트웨어 개발비	유지관리 요율	직접경비	비고
20**	○○○ ○과	20**년 ○○○○○○○○○○○○○○ ○○○○○○○ 유지관리 용역 (###)	*,***	해당없음	미산정	미산정	HW
20**	○○과	○○○○○○○○○○○○○○ ○○○○○ 유지보수 용역계약 (##)	*,***	미산정	미산정	미산정	SW
20**	○○○ ○과	20**년 ○○○○○○○○○○○○○○ ○○○○○○○ 유지관리 용역 (###)	*,***	해당없음	미산정	미산정	HW
20**	○○과	○○○○○○○○○○○○○○ ○○○○○ 유지보수 용역계약 (##)	*,***	미산정	미산정	미산정	SW
20**	○○○ ○과	20**년 ○○○○○○○○○○○○○○ ○○○○○○○ 유지관리 용역 (###)	*,***	해당없음	미산정	미산정	HW
20**	○○과	○○○○○○○○○○○○○○ ○○○○○ 유지보수 용역계약 (##)	*,***	미산정	미산정	미산정	SW
20**	○○○ ○과	20**년 ○○○○○○○○○○○○○○ ○○○○○○○ 유지관리 용역 (###)	*,***	해당없음	미산정	미산정	HW
20**	○○과	○○○○○○○○○○○○○○ ○○○○○ 유지보수 용역계약 (##)	*,***	미산정	미산정	미산정	SW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군 †☆과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ㄷ(ㄷ)과에서는 ○○○○○○○○○○ 통신장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하드웨어 유지관리에 해당되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산정 방식(재산정 소프트웨어 개발비)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유지관리 요율 및 직접경비’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견적서만으로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하였다.

또한, 향후 하드웨어 유지관리 용역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 통신장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산정 방식의 적용 대상 사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상(ㄷ)과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조치할 사항

○†ㄷ(☆⊕과, ⊕†(ㄷ)상과)는 향후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업무 인계인수 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11)

시 정 요 구

제 목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지원사업 등 중요재산 미공시 관리 소홀
관계기관(부서) 영동군 ○○○○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과에서는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지원, 야영장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취득가액이 50만원 초과하는 기계 및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간 중요재산을 관리 및 공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동군 ○○○○과에서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지원사업, 야영장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취득가액 5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그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군수는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조사업비 218백만원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중요재산 미공시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보 조 사업자	사 업 비				사업내용 (중요재산)	중요재산 관리 및 공시여부	비고
			계	국비	군비	자담			
	계		218,728	97,390	107,031	14,307			
2020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지원	-	13,000	5,040	3,780	4,180	가로등 2EA 소화기보관함 5EA 분말소화기 5EA CCTV설치	부	
2020	야영장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	-	20,000	8,000	6,000	6,000	천막방염원단 교체	부	
2020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	150,000	75,000	75,000	0	메인 스피커 2개 보조 스피커 2개 영상촬영용 캠코더 1대 영상촬영용 액션캠 1대	부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의견없음.

조치할 사항 영동군 ○○○○과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50만원 초과 기계·장비 등에 대해 공시하고 중요재산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12)

시 정 요 구

제 목 야영장업 시설 안전점검 등 관리 소홀

관계기관(부서) 영동군 ○○○○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과에서는「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야영에 적합한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야영장업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관광진흥법」제28조2(야영업자의 준수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의2(별표 7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점검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동군에서는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의 안전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받고 2년 이상 보관하고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① 야영장 안전점검 관리 소홀

영동군 ○○○○과에서는 반기별로 등록된 야영장에서 제출된 안전점검표를

확인하여 미 제출하거나 일부 월이 누락된 업체에 대하여 제출요구 및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아래 현황과 같이 안전점검 대상 11개소 중 야영장이 매월 1회 이상 실시한 안전점검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시설별로 미 점검 월이 22개월에서 최대 28개월 제출하지 않았으나 시정조치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②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관리 소홀

영동군 ○○○○과에서는 상기 표와 같이 야영장 사업자가 안전교육을 19년에는 1개소, 20년에는 3개소, 21년도에는 1개소가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조치 하지 않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야영장업 안전점검, 안전교육 미이행 현황

연번	등록일자	상호	소재지	안전점검 미제출 건수(월단위)	안전교육 이수여부 (연도)
1	2015-04-27	-	충청북도 영동군	20년(6), 21년(12), 22년(4)	여
2	2015-06-18	-	충청북도 영동군	20년(6), 21년(12), 22년(4)	부('20, '21)
3	2015-06-25	-	충청북도 영동군	20년(6), 21년(12), 22년(4)	여
4	2015-07-20	-	충청북도 영동군	19년(6), 20년(6), 21년(12), 22년(4)	부('20)
5	2015-08-17	-	충청북도 영동군	20년(6), 21년(12), 22년(4)	여
6	2016-01-06	-	충청북도 영동군	20년(6), 21년(12), 22년(4)	여
7	2016-11-29	-	충청북도 영동군	19년(6), 20년(12), 21년(12), 22년(4)	부('20)
8	2017-06-23	-	충청북도 영동군	20년(6), 21년(12), 22년(4)	여
9	2019-02-15	-	충청북도 영동군	20년(8), 21년(12), 22년(4)	여
10	2019-06-12	-	충청북도 영동군	20년(6), 21년(12), 22년(4)	부('19)
11	2018-03-12	-	충청북도 영동군	20년(6), 21년(12), 22년(4)	여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의견없음.

조치할 사항 영동군 ○○○○과에서는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가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도 매년 이수할 수 있도록 야영장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13)

시 정 요 구

제 목 몰수마약류 폐기처분대장 미작성 등 관리 소홀
관계기관(부서) 영동군 ○○○○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과에서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양귀비, 대마 등 몰수 마약류를 해당경찰서로부터 인계받아 폐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몰수마약류의 폐기 처분에 관한 사항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어, 영동군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몰수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보관의뢰를 받아 인수 보관 후 폐기 처분의 의뢰에 따라 폐기처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몰수마약류의 인계)에 따르면 몰수한 마약류를 시도지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 그 기관의 장은 마약류 인 계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를 작성·첨부해야 하고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인수증(별지 제56호 서식)을 인계한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인 수대장(별지 제57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몰수마약류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보관책임자는 인계기관 (수사기관)으로부터 몰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매 건별 매 포장용기마다 ‘몰수 마약류 보고 및 인수인계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첨부하여야 하고,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몰수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몰수마약류 폐기 처분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몰수마 약류 인수대장에 기록한 후 폐기하되 ‘몰수마약류 인계서’와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를 '몰수마약류 처분대장'에 첨부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① 몰수마약류 인수인계조서 작성관리 등 소홀

몰수마약류 인수 및 폐기 시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인수증을 발부하고 인수대장을 작성하고 폐기 시에는 인계서와 인수인계조서를 몰수마약류 처분대장에 첨부하여 보관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영동군 ○○○○과에서는 감사기간 중 0회 인수받은 몰수마약류 00주 대하여 몰수마약류 처분(폐기)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몰수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몰수마약류 인수 및 관리 현황

연도별	품 목	인수량	인수건수	마약류 인수폐기 관련 서류작성 비치 여부				비고
				몰수마약류 인수대장 작성비치 여부	인계서 보관 여부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수인계 조서 작성여부	몰수마약류 폐기(처분) 대장 작성비치 여부	
		00주	0회					
2019. 4~12월	양귀비	00주	0회	부	부	부	부	
2020	양귀비	00주	0회	부	부	부	부	
2021	양귀비 대 마	00주 00주	0회	부	부 (일부)	부	부	
2022.~4월	몰수마약류 인수사항 없음.							

2. 마약류 취급자 교육계획 미수립 등 관리 소홀

[표2] 마약류 취급자 신규지정 및 교육 미이수 현황

연번	등록일자	업소명	이름	소재지	교육 이수여부
1	2019-04-08	-	-	영동군	부
2	2019-09-04	-	-	영동군	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의 교

육에 관한 사항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어, 영동군에서는 마약류취급자 허가 후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50조에 따라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하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되 그 계획에는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에 따라 마약류 판매 및 봉합에 관한 사항, 사고처리 보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 보관저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대장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동군 ○○○○과에서는 감사기간 중 2개소를 마약류취급자로 지정하면서 전년도 말까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마약류취급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마약류취급자 교육 수료 교부대장을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2019년 4월부터 ~ 현재까지 마약류취급자 교육계획 수립하지 않고 교육수료 교부대장을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관련 법규를 숙지 등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분상 처분

1. 대상자 000, 000
2. 종 류 훈계
3. 사 유

- 000는 2017. 7. 24. ~ 2020. 1. 12.까지 의약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동경찰서로부터 0회에 걸쳐 인계요구 된 양귀비 몰수마약류 00주를 인수 후 폐기를 하면서 인계증과 인수인계조서 작성·보관하지 않는 등 몰수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이 있음

- 000는 2020. 1. 13. ~ 2021. 7. 1.까지 의약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동경찰서로부터 0회에 걸쳐 인계요구 된 양귀비, 대마 몰수마약류 00주를 인수 후 폐기를 하면서 인계증과 인수인계조서 작성·보관하지 않는 등 몰수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이 있음

조치할 사항 영동군에서는

① 위 000, 000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② 몰수마약류는 인수 후 폐기처분 시 관련규정에 따른 인수인계조서 등을 갖추어 몰수마약류 관리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마약류 취급자 교육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 분 요 구 서(14)

주 의 요 구

제 목 소비자식품감시원 단독출입신청서 미발급 등 운영 소홀
관계기관(부서) 영동군 ○○○○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과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위생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법」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1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식품위생법」제18조 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군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에 의해 반기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 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계획은 매년 2월말 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위촉하는 기관은 소비자감시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단독출입신청서 미발급 등 관리 소홀

[표] 단독출입신청서 승인없이 소비자식품감시원 단독직무수행 내역

연번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업소	점검사항
1	2019.4.18. ~ 4.22.	-	일반음식점 7개소 , 즉석제조판매가공업6개소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등
2	2022.1.17 ~1.27	-	일반휴게음식점 498개소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등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점검의 직무를 단독으로 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출입신청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독출입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출입목적, 점검업체의 선정 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출입 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소비자식품감시원 단독으로 업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할 경우 단독출입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하고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점검 시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제시 후 점검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영동군 ○○○○과에서는 상기와 같이 소비자식품감시원 단독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단독출입신청서도 미발급 하는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간 교육계획 및 운영계획 미수립

영동군 ○○○○과에서는 식품점검, 어린이보호식품점검, 시니어감사원 운영 등에 필요한 소비자식품감시원을 1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한 후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도 소비자식품감시원의 활동 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영동군 ○○○○과에서는 소비자식품감시원 연간교육계획 미수립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지 않았으며, 또한 소비자감시원 활동계획을 미수립 하는 등 소비자식품감시원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의견없음.

조치할 사항 영동군 ○○○○과에서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이 단독 업무 수행 시 「식품위생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단독출입신청서를 승인발급하시기 바라며, 소비자식품감시원 연간교육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비자식품감시원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15)

주 의 요 구

제 목 공공사업 추진 시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 미이행

관계기관(부서) ○○군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는 산지·농지에 대한 도로구역의 결정, 변경 고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산지관리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농지 및 산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전용 협의를 거쳐 전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농지 및 산지가 포함된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표〉 2019~2021 ○○군 공공사업 추진시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 미이행 내역 (단위 : 건)

연도	고시번호	제 목	게재일	사전협의 미이행 필지			비 고
				계	농 지	임 야	
	2건			14	6	8	
2019	○○군 고시 제2019-45호			7			
2022	○○군 고시 제2022-33호			7			

※ ○○군 ○○○○과 제출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사전협의 미이행 필지내역 붙임 참고.

그러나 ○○군에서는 ○도 5호선(○○○)선형개량공사 외 1건의 도로구역결정 고시 시 농지 및 산지 관리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고시하는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협의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고시 전 산지·농지에 대한 관련법 검토 협의(의제처리)를 완료해야 하였으나, 관련법령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업무연찬 등 관련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에서는

농지 및 산지를 경유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등이 관련 법규에 의거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16)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소홀

관계기관(부서) ○○군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농업용 대형관정 설치·관리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관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시행자가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해야 하며,

「농어촌정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9조제1항, 제2항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2조에 따르면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농·어업용수는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군에서는 2017~2018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농업용 대형관정

3개소를 설치하였으나 관련 법규에서 정한 대형 농업용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2018~2021년 ○○군 농업용 대형관정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비/사업량(공)	관리자	양수 능력 (톤/일)	준공 확인증 발급일	수질검사 기한	비고 (경과일)
계		249,842 / 3					
2017		89,000 / 1	○○군수 (○○과)	161			
2017		75,487 / 1	○○군수 (○○과)	154			
2018		85,355 / 1	○○군수 (○○과)	165			

※ ○○군 ○○과 제출자료를 재구성하였음, 감사일('22.5.18.)현재 경과일 산정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군 ○○과에서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9조제1항, 제2항과 환경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2조에 따라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농·어업용수를 대상으로 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한발 대비 농업용 대형관정의 수질검사를 조속히 실시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17)

시 정 요 구

제 목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소홀
관계기관(부서) ○○군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는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제3항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행령 제7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고,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취득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와 그 세대원 전부의 명의로 과거 취득농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대원 전부를 기준으로 1천㎡를 초과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한 자경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 또는 농지처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법」 제10조에는 농지 소유자는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법규에 따라 감사기간 중 ○○군에서는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총 937건을 발급하였는데 <표>과 같이 개인이 1필지 또는 여러 필지 합산면적이 1천㎡를 초과하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 신청한 3건(3,473㎡)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세대원이 1천㎡ 이하로 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함으로써 세대원이 소유한 농지가 1천㎡를 초과한 2건(2,841㎡), 총 5건(6,314㎡)의 발급대상이 아닌 주말 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019~2022년 ○○군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내역 (단위 : 건)

기 간	발 급 처	합 계		개인 초과소유		세대 초과소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9.4.1.~'22.5.		5	6,314	3	3,473	2	2,841

※ ○○군 ○○과 제출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세부내역 불임 참조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군에서는 농지취득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들을 업무담당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관련업무를 철저히 추진 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에서는

「농지법」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소유상한 면적 범위 내 취득 여부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지법」 제7조에 따라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총 5건 (6,314㎡)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1,000㎡ 개인 초과,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단위 : 건)

연번	신청자	신청목적	발급일	신청인 주소	농지소재지	지번	취득면적 (㎡)	비고
	합계		3건				3,473	
1		계					1,076	
		주말체험영농	'20.01.06.				669	
		주말체험영농	'20.01.06.				165	
		주말체험영농	'20.02.23.				456	
2		계					1,256	
		주말체험영농	'21.03.30.				628	
		주말체험영농	'21.06.02.				628	
3		계					1,141	
		주말체험영농	'21.05.31.				483	
		주말체험영농	'21.05.31.				175	
		주말체험영농	'21.11.02.				483	

〈붙임2〉 1,000㎡ 세대원합산 초과,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단위 : 건)

연번	신청자	신청목적	발급일	신청인 주소	농지소재지	지번	취득면적 (㎡)	비고
	합계		2건				2,841	
1		계					1,103	
		주말체험영농	'22.01.17.				552	
		주말체험영농	'22.01.17.				552	
2		계					1,738	
		주말체험영농	'20.10.12.				196	
		주말체험영농	'20.10.12.				630	
		주말체험영농	'20.10.12.				44	
		주말체험영농	'20.10.12.				196	
		주말체험영농	'20.10.12.				630	
		주말체험영농	'20.10.12.				44	

처 분 요 구 서(18)

주 의 요 구

제 목 농업기술인 전문경영과정 대상자 선정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군 ○○○○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군 ○○○○센터에서는 농업 전문가 및 지역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신청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에서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 CEO를 육성하고, 농업기술, 유통, 마케팅 등 폭넓은 교육을 통한 지역 리더를 육성하고자 2019년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운영을 위해 추가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도○○○○원의 2019년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모집 계획 및 추가 모집 공문에 따르면, 추가모집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우리 도내 거주(해당 시·군 실거주 3년 이상)하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를 모집대상으로 위 조건을 세부모집 요강에서 ‘근거서류 제출 확인(필수)’로 통지하였으며, 증빙서류로는 ‘농업경영체 등록명부, 축산업 등록명부, 농지원부, 농(업인)사 확인서(날짜기입), 기타 ○○○○센터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내부결재)’로 명시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군에서는 2019년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추가 모집 지원자에 대하여 필수 지원자격인 영농 3년 이상인 자 여부 확인을 위해 농지원부를 제출받아 자격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표>와 같이 추가 모집일(2019.2.15.일) 현재 농지원부(최초 농지원부 작성일 2016.9.20.) 상 2년 4개월이 경과하여 3년 이상 영농 조건을 미충족한 부적정한 자를 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다.

〈표〉 2019년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추가 모집 내역

연도	사업비 (천원)	신청인	주소	과정명	필수자격요건 충족 여부		비고
					3년이상 영농	3년이상 실거주	
2019	2,750천원 (보조2,250,자담50)				미충족 (2년4개월)	충족 (2015.9.17.전입)	제26기 수료

※ ○○군 ○○○○센터 제출자료를 재구성하였음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의견없음

조치할 사항 ○○군에서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신청자 검토 시 관련 기준 충족 여부 검토에 주의
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19)

주 의 요 구

제 목 산림사업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및 안전관리계획 관리 소홀
관계기관(부서) ○○군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는 숲가꾸기, 조림, 풀베기 등 산림자원을 조성·관리하는 산림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9조제1항,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600ha 이하 사업장에서 현장대리인 1인 이상을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h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또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착수계, 작업원운영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 그 결과를 승인서 등으로 승인하거나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군의 조림, 풀베기, 숲가꾸기 등 감사기간 중 수행한 산림자원 조성

사업을 확인한 결과 총 83건 중 2019년 3건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현장대리인을 중복 배치한 사실이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받아 이를 승인 통보하지 않고 수행한 사업이 총 21건(2019년 16건, 2020년 4건, 2021년 1건) 확인되는 등 사업추진 시 현장대리인의 중복배치 되거나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가 미승인 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군 산림사업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미승인 내역 (단위:건)

구 분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승인				비 고
	계	승인	미승인	해당없음	
합 계	83	48	3	32	
'19	16	5	3	8	
'20	26	17	-	9	
'21	26	11	-	15	
'21	15	15	-	-	

※ ○○군 ○○과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붙임1> 세부내역 참조

《표2》 ○○군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역 (단위:건)

구 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여부			비 고
	계	제출	미제출	계	승인	미승인	
합계	83	83	-	83	62	21	
'19	16	16	-	16	-	16	
'20	26	26	-	26	22	4	
'21	26	26	-	26	25	1	
'22	15	15	-	15	15	-	

※ ○○군 ○○과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붙임2> 세부내역 참조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군에서는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현장대리인 중복배치와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승인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군 산림사업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미승인 세부내역

(단위:건)

연번	연도	사업명	착공일 (준공일)	사업량 (ha)	업체명	현장대리인 기술등급/성명	발주청 중복배 치승인
		3건 중복배치		160.36			
1	'19		2019.03.27. (2019.05.05.)	13.60			미승인
2	'19		2019.3.28. (2019.4.24.)	19.11			
3	'19		2019.03.27. (2019.05.05.)	16.40			미승인
4	'19		2019.3.28. (2019.4.24.)	21.89			
5	'19		2019.07.01. (2019.09.08.)	49.18			미승인
6	'19		2019.07.12. (2019.09.19.)	40.18			

※ ○○군 ○○과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붙임2》○○군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미승인 내역

(단위:건)

연번	연도	사업명	착공일 (준공일)	사업 량(ha)	업체명	안전관 리계획 서제출	안전관 리계획 서승인	비고
		21건		550.66				
1	'19		2019.03.27. (2019.05.05.)	13.60		제출	미승인	
2	'19		2019.3.28. (2019.4.24.)	19.11		제출	미승인	
3	'19		2019.03.27. (2019.05.05.)	16.40		제출	미승인	
4	'19		2019.3.28. (2019.4.24.)	21.89		제출	미승인	
5	'19		2019.07.01. (2019.09.08.)	47.40		제출	미승인	
6	'19		2019.07.12. (2019.09.19.)	50.40		제출	미승인	
7	'19		2019.07.12. (2019.09.19.)	49.70		제출	미승인	
8	'19		2019.07.01. (2019.09.08.)	49.18		제출	미승인	
9	'19		2019.07.12. (2019.09.19.)	40.18		제출	미승인	
10	'19		2019.07.01. (2019.09.08.)	52.36		제출	미승인	

연 번	연 도	사업명	착공일 (준공일)	사업 량(ha)	업체명	안전관 리계획 서제출	안전관 리계획 서승인	비 고
		21건		550.66				
1	'19		2019.03.27. (2019.05.05.)	13.60		제출	미승인	
2	'19		2019.3.28. (2019.4.24.)	19.11		제출	미승인	
3	'19		2019.03.27. (2019.05.05.)	16.40		제출	미승인	
4	'19		2019.3.28. (2019.4.24.)	21.89		제출	미승인	
5	'19		2019.07.01. (2019.09.08.)	47.40		제출	미승인	
6	'19		2019.07.12. (2019.09.19.)	50.40		제출	미승인	
11	'19		2019.07.01. (2019.09.08.)	51.32		제출	미승인	
12	'19		2019.07.12. (2019.09.19.)	44.72		제출	미승인	
13	'19		2019.10.17. (2019.11.13.)	4.00		제출	미승인	
14	'19		2019.10.28. (2019.11.24)	2.30		제출	미승인	
15	'19		2019.10.23. (2019.11.19.)	4.10		제출	미승인	
16	'19		2019.10.17. (2019.11.13.)	4.00		제출	미승인	
17	'20		2020.03.06. (2020.04.19.)	15.00		제출	미승인	
18	'20		2020.03.06. (2020.04.19.)	15.10		제출	미승인	
19	'20		2020.03.06. (2020.04.19.)	11.90		제출	미승인	
20	'20		2020.12.03 (2020.12.22.)	38.00		제출	미승인	
21	'21		2021.11.24. (2021.12.23.)	821주		제출	미승인	

※ ○○군 ○○과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처 분 요 구 서(20)

시 정 요 구

제 목 임도설치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소홀 등
관계기관(부서) ○○군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426호) 제5조(임도설치계획의 작성)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5년 단위로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도설치계획서에 예정지노선조사서, 노선도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426호) 제26조(임도의 보수·관리)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임도 노선별로 노면 및 절·성토면 기타 시설물의 상태를 매년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도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7조(임도관리대장)에서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임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임도의 신설·구조개량·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군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감사일 현재 관내 32개 노선, 총 112.11km의 임도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는 제4차 임도설치계획(2016~2020) 종료에 따라 제5차 임도설치계획(2021~2025) 수립(2020.4.28.) 시 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1)를 누락하여 수립하였으며, 이를 변경 수립(2021.7.14.) 때 이를 보완하는 등 임도 설치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군에 설치된 연도별 임도노선 합계 93개 노선, 329.22km 중 관련 점검 규정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점검 시 점검대상거리 658.44km (329.22km × 2회)에서 실제 점검한 노선은 40개 노선, 296.77km로 53개 노선, 361.67km 해당되는 임도가 미점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점검과 연계한 임도보수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는지 확인 할 수 없는 등 임도점검 업무가 소홀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규정에서 정한 임도 관리대장 서식을 변형하여 자체서식으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등 임도 점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군 관내 임도 점검 현황

(단위:km)

구분	임도현황 및 점검대상 거리			임도 점검 내역		미점검 내역(C=A-B)		비고
	노선 및 거리		연간점검 대상거리(A)	노선	점검 거리(B)	노선	미점검 거리(C)	
합계	93	329.22	658.44	40	296.77	53	361.67	
2019	30	107.41	214.82	4	28.87	26	185.95	
2020	31	109.70	219.40	4	43.68	27	175.72	
2021	32	112.11	224.22	32	224.22	0	0	

※ ○○군 ○○과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연간점검 대상거리는 임도거리×2 (2회 이상/매년, 점검규정)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군에서는 산림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에서는

임도점검 규정에 따라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임도를 관리하여 주시고, 조속히 규정 서식의 임도관리대장으로 변경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21)

시 정 요 구

제 목 입목벌채지 임산물 운반로 사후관리 소홀

관계기관(부서) ○○군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는 입목벌채 허가 등 벌채 및 벌채지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는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하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의 별표3의3 규정에 따라서 입목벌채 허가 시 임산물의 운반을 위해 임산물 운반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8항에 따라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설치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로 명시되어 있고,

허가 후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9항 및 산림청 고시 제2016-85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지방서 작성기준”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지방서 작성기준 및 방법 대로 복구되었는지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군에서는 감사기간 중 총 432건의 산림경영계획 사업신고 및 입목벌채 허가, 신고건의 벌채완료지에 대해 207건은 사후점검 완료 하였으나 225건은 조림계획 수립(90건), 움작갱신(107건), 운재로개설(11건), 기타(17건)을 사유로 복구

여부를 확인·점검하지 않는 등 임산물 운반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군 임산물운반로 사후점검 내역

(단위:건)

구 분	합 계	점 검	미 점 검					비 고
			계	조림 계획	움짱 갱신	운재로 개설	기타	
임산물운반로 사 후 점 검	432	207	225	90	107	11	17	

※ ○○군 ○○과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붙임> 세부내역 참조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군에서는 벌채완료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향후 규정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벌채완료지에 대한 임산물운반로 복구 등 사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미점검된 225건은 조속히 점검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22)

주 의 요 구

제 목 산림사업 하자검사 미이행

관계기관(부서) ○○군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는 숲가꾸기, 임도, 등산로 및 휴양림 등 각종 산림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0조(하자검사)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의 3. 하자 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따로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표》 ○○군 산림사업 따로최종 검사 실시내역

(단위:건)

구 분	합 계	미도래	최종따로검사 대상			비 고
			계	실 시	미실시	
하자검사 (최종 따로검사)	106	72	34	-	34	

※ ○○군 ○○과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붙임> 세부내역 참조

그러나 ○○군 ○○과에서는 2019.4월~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검사 대상 106건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한 2019년 보호수 정비사업 등 총 34건의 사업에 대해 기간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군에서는 산림사업 추진 시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사항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따로 최종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23)

시 정 요 구

제 목 축산물 영업자 정기점검 및 위생교육 지도감독 소홀

관계기관(부서) ○○군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는 축산물 영업자(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등)의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에 대해서 시장·군수는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연 1회이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제5항에서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에서 위생교육대상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시기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제2호에서 제50조의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47조(과태료)제4항제2호에서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군 ○○과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 1회이상 검사를 해야 하는 영업장의 점검 이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1>과 같이 점검대상 영업장 6개소 중 2019년 4개소, 2020년 1개소, 2021년 2개소, 3년간 총 7개소의 영업장을 미검사한 사실이 있다.

<표1> 2019~2021년 ○○군 정기점검 대상 영업장 미점검 내역 (단위 : 건)

연번	판매업구분명	영업장명	대표자	연1회 이상 점검 내역			비고
				2019	2020	2021	
계	점검대상 6개소		점검 9 미점검 7	점검1 미점검4	점검4 미점검1	점검4 미점검2	
1	식육포장처리업			×	점검	점검	
2	식육포장처리업			×	×	×	
3	식육포장처리업			×	점검	×	
4	식육포장처리업			×	점검	점검	
5	식육포장처리업			점검	점검	점검	
6	식육포장처리업					점검	

※ ○○군 ○○과 제출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세부내역 불임 참조.

또한 <표2>와 같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군에서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영업장에 대한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누계 총 170개소 이수 대상 영업장 중 65개소(2019년 25개소, 2020년 18개소, 2021년 22개소)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영업장이 축산물 위생 정기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한 지도·단속을 소홀히 하여 총 34건의 과태료 부과 대상 영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2019~2021년 ○○군 축산물 위생 정기교육 미이수 내역 (단위 : 개소)

구 분	교육대상	수 료 현 황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건)	비고
		이 수	미이수		
계	170	105	65	0	
2019	53	28	25	-	
2020	55	37	18	-	
2021	62	40	22	-	

※ ○○군 ○○과 제출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세부내역 불임 참조.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군 ○○과에서는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영업장에 대해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축산물 영업장의 연간 점검대상 영업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영업장의 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영업장은 조속히 교육 이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2021년 ○○군 축산물 위생 정기교육 미이수 내역
 ※ 판매업 구분 : 62개소 (식육포장6, 식육즉석13, 식육판매43)

(단위 : 개소)

연번	판매업 구분명	사업장 명 칭	대표자	정기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미부과 34건	비고
				2019 이수 105 미이수 65	2020 이수 37 미이수 18	2021 이수 40 미이수 22		
계	62개소							
1	식육포장처리업			○	○	○	-	
2	식육포장처리업			×	○	×	부	
3	식육포장처리업			×	○	×	부	
4	식육포장처리업			○	○	○	-	
5	식육포장처리업			○	×	○	부	
6	식육포장처리업					○	-	
7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	부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	부	
9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	부	
10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	부	
11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	-	
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	부	
1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	-	
1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	부	
1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	-	
16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	부	
17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	부	
1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19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20	식육 판매업			○	○	○	-	
21	식육 판매업			×	×	×	부	
22	식육 판매업			○	○	×	부	

연번	판매업 구분명	사업장 명칭	대표자	정기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미부과 34건	비고
				2019 이수28 미이수25	2020 이수37 미이수18	2021 이수40 미이수22		
계	62개소		이수 105 미이수 65					
23	식육판매업			○	○	○	-	
24	식육판매업			○	○	○	-	
25	식육판매업			×	○	○	부	
26	식육판매업			×	×	×	부	
27	식육판매업			×	×	×	부	
28	식육판매업			○	○	○	-	
29	식육판매업			○	○	×	부	
30	식육판매업			○	○	○	-	
31	식육판매업			○	○	○	-	
32	식육판매업			○	○	○	-	
33	식육판매업				○	○	-	
34	식육판매업			○	○	○	-	
35	식육판매업			×	×	×	부	
36	식육판매업			○	○	×	부	
37	식육판매업			○	○	○	-	
38	식육판매업			○	○	○	-	
39	식육판매업			○	×	○	부	
40	식육판매업			○	○	○	-	
41	식육판매업			○	○	○	-	
42	식육판매업			×	×	×	부	
43	식육판매업			○	○	○	-	
44	식육판매업			×	×	×	부	
45	식육판매업			○	○	○	-	
46	식육판매업			×	○	×	부	
47	식육판매업			×	○	○	부	
48	식육판매업			×	×	×	부	

연번	판매업 구분명	사업장 명칭	대표자	정기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미부과 34건	비고
				2019 이수28 미이수25	2020 이수37 미이수18	2021 이수40 미이수22		
계	62개소		이수 105 미이수 65					
49	식육판매업			×	×	○	부	
50	식육판매업			○	○	○	-	
51	식육판매업			○	○	○	-	
52	식육판매업			×	○	×	부	
53	식육판매업			×	○	×	부	
54	식육판매업			×	○	○	부	
55	식육판매업			○	×	○	부	
56	식육판매업			×	×	○	부	
57	식육판매업			×	○	○	부	
58	식육판매업					○	-	
59	식육판매업			○	○	×	부	
60	식육판매업				○	×	부	
61	식육판매업					○	-	
62	식육판매업					○	-	

처 분 요 구 서(24)

시 정 요 구

제 목 기능이 상실된 초지에 대한 초지해제 미이행

관계기관(부서) ○○군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는 초지의 지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초지법」 제2조에서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며,

「초지법」 제24조에서 시장·군수는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에서 초지로 미이용 되는 등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의 조치규정 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제3호에서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제4호에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등은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5호에서 그 밖에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지법」 시행령 제22조(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에서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초지로 유지할 수 없어 초지 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규정에 따라 ○○군에서는 76필지, 1,065,566㎡의 초지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군 ○○과에서는 초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총 76필지 중 42필지의 초지가 초지법 제24조의2에 따라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에 해당함에도 초지에서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등 미이용되고 있는 초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019~2021년 ○○군 초지실태점검 시 미이용 조사건(해제대상 내역)

구 분	필지	면 적(㎡)	비 고
계	76	1,065,566	
초지 이용	29	572,158	
초지 미이용	47	493,408	
(해제 대상)	(42)	(371,638)	조성 25년 경과, 2년 이상 미이용

※ ○○군 ○○과 제출자료를 재구성하였음, <불임> ○○군 초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참고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군 ○○과에서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초지법」에 따라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이용되지 아니된 초지 42필지, 371.638㎡에 대하여 해제 검토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조치할 사항 ○○군에서는

「초지법」 규정에 따라 미이용되는 초지 42필지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25)

시 정 요 구

제 목 파견자(30일 이상) 수당 과다 지급 등 업무 소홀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재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재무과는 급여(수당) 지급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0호, '21. 3. 30) 제14조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대상으로는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중 전산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65호, '21. 6. 10.)에 따르면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 기술정보수당 등)은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00호, '21. 7. 19.) 제4조 제2호는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등)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업무경비 중 대민활동비는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지급에 대해 파견, 휴직 등으로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다만, 파견근무자(근무조정 포함)도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경비지급 기관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급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 1. 1.)에 따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에 대해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 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동군은 2020년 부터 2022년까지 공로연수 및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중견 간부양성 과정 등에 직원을 파견한 바 있다.

영동군에서는 <표1> 의 파견자 수당 부적정 지급 내역 15명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로연수자 및 30일 이상 파견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기술정보수당가산금) 및 특정업무경비(읍면동근무수당, 대민활동비)등을 일할 계산 지급 또는 지급하지 않았어야 했다.

<표 1> 파견자 수당 부적정 지급 내역

(단위 : 원)

대 상 자				수당명	지급액	회수액	비고
구분	파견기간	직급	성 명				
합계			15명		8,707,520	8,707,520	
소계			12명		7,980,000	7,980,000	
공로연수	'20.07.01~ '21.6.30			기술정보수당	600,000	600,000	
				기술정보가산금	240,000	240,000	
"	'20.07.01~ '21.6.30			기술정보수당	600,000	600,000	
				기술정보가산금	360,000	360,000	
"	'20.07.01~ '21.6.30			기술정보수당	600,000	600,000	

대 상 자				수당명	지급액	회수액	비고
구 분	파견기간	직급	성 명				
"	'20.07.01~ '21.6.30			기술정보수당	600,000	600,000	
"	'20.01.01~ '20.12.31			기술정보수당	360,000	360,000	
				기술정보가산금	120,000	120,000	
"	'20.07.1~ '21.06.30			기술정보수당	360,000	360,000	
				기술정보가산금	120,000	120,000	
"	'20.07.1~ '21.06.30			기술정보수당	720,000	720,000	
"	'21.07.01~ '22.06.30			기술정보수당	500,000	500,000	
				기술정보가산금	200,000	200,000	
"	'21.07.01~ '22.06.30			기술정보수당	500,000	500,000	
"	'21.07.01~ '22.06.30			특수업무수당 (읍면동)	700,000	700,000	
"	'21.07.01~ '22.06.30			특수업무수당 (읍면동)	700,000	700,000	
"	'21.07.01~ '22.06.30			특수업무수당 (읍면동)	700,000	700,000	
소 계			3명		727,520	727,520	
장기교육	'22.02.16~ '22.12.14			특정업무수당 (대민)	173,220	173,220	
"	'22.02.16~ '22.12.14			특정업무수당 (대민)	173,220	173,220	
"	'22.02.16~ '22.12.14			기술정보수당	103,930	103,930	
				기술정보가산금	103,930	103,930	
				특정업무수당(대민)	173,220	173,220	

그런데, 영동군에서는 '20 ~ '21년 공로연수자 지방○○○○○ ○○○ 등 12명과 '22년 충청북도 장기교육 과정에 지방○○○○ ○○○선 등 3명 총 15명에게 8,707천원의 특수업무수당과 특정업무경비 등(표 1, 파견자 수당 부정지급 내역 참조)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의견없음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수당 등 급여가 부적정하게 지급 된 15명(30일 이상 파견자)에 대하여 8,707,520원을 조속히 환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26)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사업 정산 관련 외부감사인 적정성 미검증 등 업무 소홀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농정과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서의 특성에 맞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보조금법」 제27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통합관리지침」 제28조(정산보고서의 검증), 「재정사업관리규정」 제5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에 따르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국비, 지방비 개별 산정) 3억원 및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⁹⁾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총액 3억원 이상 사업) 및 감사보고서(총액 10억원 이상 사업)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집행 증빙자료와 함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금(국비, 지방비 개별 산정) 총액 3억원 및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감사보고서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영동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 집행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검사를 성실히 이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영동군 농정과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표 1>과 같이 외부감사인 정산보고서 미검증 및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업 현황과 같이 보조금 총액(국비, 지방비 개별 산정) 3억원 및 10억원 이상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서 및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지 않은 채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정산검사를 정상 처리하여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표 1〉 외부감사 적정성 미검증 및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부서	사 업 명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정산보고서 작성성 검증 여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국비	도비	군비			
계		5개 사업	10,120	1,991	1,220	1,007	5,902		
'19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859	540	0	313	2,006	부	해당없음
'20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335	555	96	225	1,459	부	해당없음
'21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799	581	112	261	1,845	부	해당없음
'21	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409	315	47	47	0	부	해당없음
'21	농업기술 센터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	960	0	540	90	330	부	해당없음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	758	0	425	71	262	부	해당없음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영동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보조금액이 3억원 및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정산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27)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업무추진 소홀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재무과, 상수도사업소, 힐링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약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30조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장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1인 건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되며 용역·물품에 대해서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제2장 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

는 사업은 통합 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발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의 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예외¹⁰⁾로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¹¹⁾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한다.)에 일정기간(3~5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¹²⁾의 87.745%(용역·물품은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동군 에서는 아래 <표1>의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분할발주 하여서는 안 되었다.

<표 1> 수의계약 소홀 추진 사업 명세

<공 사>

연번	계약일자	계약명	사업위치	계약금액 (천원)	준공일자	계약상대자	사업부서
1	2021.06.30	2021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군도 1공구)	양산면 학산면	15,636	2021.08.03	(○)○○○○○ (○○○)	건설교통과
	2021.06.30	2021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군도 2공구)	영동읍 용산면 양강면	17,727	2021.08.03		
2	2021.06.30	2021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군도 4공구)	추풍령면 황간면 심천면 매곡면	15,110	2021.07.30	○○○○○○○○○ (○○○)	건설교통과
	2021.06.30	2021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농어촌도로 3공구)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13,410	2021.07.30		
계		4건		61,883			

<용 역>

10) “금액기준”-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여성·장애인기업은 5천만 원 이하), “하자곤란 등”, “천재지변 등”

11) 공사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12) 예정가격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 두는 가격

연번	계약일자	계약명	사업위치	계약금액 (천원)	준공일자	계약상대자	사업부서
1	2019.12.16	2019 영동 ○○○ 대도시 판매 체험이벤트 대행용역	서울시 용산역	13,410	2020.01.11	○○○○○ (○○○)	산림과
	2019.12.16	2019 영동 ○○○ 대도시 홍보 대행용역	서울시 용산역	12,240	2020.01.13		
	2019.12.16	2019 영동 ○○○ 대도시 판매 2차 대행용역	서울시 용산역	18,120	2020.01.13		
	2019.12.16	2019 영동 ○○○ 대도시 판매 1차 대행용역	서울시 용산역	18,120	2020.01.13		
2	2021.11.10	2022년 ○○○ ○○○○사업 실시설계용역(1지구)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19,407	2021.12.20	(○)○○ (○○○)	안전관리과
	2021.11.10	2022년 ○○○ ○○○○사업 실시설계용역(2지구)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양강면	19,451	2021.12.20		
계		6건		100,748			

<물 품>

연번	계약일자	계약명	사업위치	계약금액 (천원)	준공일자	계약상대자	사업부서
1	2019.10.08	개인 ○○○○장비 구입	영동군	10,230	2019.10.21	○○○○○○○○ (○○○)	산림과
	2019.12.12	2019년도 ○○○○장비 구입		15,500	2019.12.16	○○○○○ (○○○)	
2	2020.02.17	산불감시원 ○○○ 구입		18,450	2020.02.20	○○○○○○○○ (○○○)	
	2020.03.09	산불예방진화대 ○○○ 구입		18,000	2020.03.18	○○○○○ (○○○)	
	2020.04.24	산불감시원 ○○○ 구입		18,000	2020.04.24	○○○○○ (○○○)	
3	2021.02.08	산불감시원 ○○○ 구입		14,400	2021.02.19	○○○○○ (○○○)	
	2021.02.16	산불예방진화대 ○○○○구입		18,000	2021.02.25	○○○○○○○○ (○○○)	
	2021.03.10	산불감시원 ○○○ 구입(추가)		16,000	2021.03.12	○○○○○ (○○○)	
	2021.04.21	산불감시원 ○○○ 구입		16,000	2021.04.26	○○○○○ (○○○)	
4	2022.01.13	산불예방진화대 ○○○ 구입		18,000	2022.02.07	○○○○○○○○ (○○○)	
5	2022.03.24	산불감시원 ○○○ 구입		18,000	2022.03.30	○○○○○ (○○○)	
6	2021.06.30	상촌면 ○○○ ○○○○○○○○ ○○○○○ 구입	상촌면	74,052	2021.12.30	○○○○○ (○○○)	상수도사업소
		상촌면 ○○○ ○○○○○○○○○○ ○○○○○ 구입(유곡리)	상촌면	71,973			

연번	계약일자	계약명	사업위치	계약금액 (천원)	준공일자	계약상대자	사업부서
7	2021.11.17	○○○단지 생활용품 구입(간절기 이불 외)	웰니스단지	15,300	2021.11.22	○○○○○○○ (○○○)	힐링사업소
	2021.11.17	○○○단지 생활용품 구입(여름 이불 외)		12,750	2021.11.22	○○○ (○○○)	
8	2021.11.17	○○○단지 가전제품 구입(냉장고 외)	웰니스단지	16,816	2021.11.23	○○○○○○○○ ○○○○(○○○)	
	2021.11.17	○○○단지 가전제품 구입(텔레비전)		15,670	2021.11.23	(○)○○○○○○ (○○○)	
9	2021.11.08	○○철 ○○○○○ ○○ 구입비 지급	영동군	18,200	2021.11.29	○○○○○ (○○○)	건설교통과
	2021.11.24	○○철 ○○○○○ ○○ 구입비 지급		18,018	2021.11.30		
	계	19건		423,359			

그런데 영동군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사업의 성질이나 내용에 비추어 분할하여 계약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통합 발주하지 않고 이를 2개 사업으로 분할한 후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각각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다수 업체에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영동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연찬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신분상 처분

1. 대상자 지방시설주사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시설주사 ○○○, 지방행정주사 ○○○, 지방행정주사 ○○○, 지방행정주사 ○○○
2. 종 류 훈계
3. 사 유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은 감사대상 기간 중 팀장으로서 당면 업무추진을 위해 계약업무를 진행하면서 통합발주 대상 사업을 임의로 분할발주 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다수의 업체에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관리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1. 위 대상자 6명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의계약 업무추진 시 통합발주 대상 사업을 임의로 분할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업무연찬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28)

주 의 요 구

제 목 전기공사 시공업체 선정 소홀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재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약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10-가-1)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해당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발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등록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여 무자격자의 시공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기공사를 발주할 때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¹³⁾를 제외하고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업자에게 발주하여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 13) 경미한 전기공사 : 1. 꽃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 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꽃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영동군에서는 2020.05.04. 부터 2020. 9. 23.까지 영동○ ○○○○(○○○○○○○) 건물 LED 채널 제작 구입 등 총 2건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동군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른 전기공사를 발주할 때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¹⁾를 제외하고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업자에게 발주하여 시공하게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영동군에서는 아래 현황의 ‘전기공사 무자격 업체시공 명세’ 와 같이 영동○ ○○○○(○○○○○○○) 건물 LED 채널 제작 구입 등을 추진하면서 전기공사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시공토록 하여야 함에도, 「전기공사법」에 따른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서 제작·설치하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전기공사 무자격 업체 시공 명세

(단위:천원)						
연번	계약일자	계약명	사업위치	계약금액	준공일자	계약상대자 (대표)
1	2020.05.04.	영동갑 ○○○○ 건물 (○○○○○○○) LED 채널 제작 구입	○○○○○○○	16,192	2020.07.30	○○○○○○○ (○○○)
2	2020.05.07.	영동군 ○○○○ 설치 (○○○, ○○)사업 LED 간판 제작 설치공사	○○○, ○○ ○○○	19,900	2020.09.23	○○○○○○○ (○○○)
계		2건		36,092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의견없음

신분상 처분

1. 대상자 지방○○○○ ○○○
2. 종 류 훈계
3. 사 유

지방○○○○ ○○○은 2019. 11. 06. ~ 2020. 7. 09.까지 영동군에서 LED채널 및 간판 제작 설치공사 등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여 정당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실무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1. 위 지방○○○○ ○○○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2. 전기공사 계약업무 추진시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고, 업무연찬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29)

시 정 요 구

제 목 보조사업 정산검사 미 실시 등 업무추진 소홀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주민복지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주민복지과에서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법률 제16855호 2019.12.31.)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동군 주민복지과에서는 아래 <표1>의 사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했다.

〈표 1〉 보조사업 정산 미실시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정산 보고서 제출일	정산 검사일	비고
	총액	국비	도비	군비				
2020 ○○○○○○○○○○ ○○○○ 지원사업 (○○○ 단체 관련 13개 사업)	89,330	-	35,732	53,598	2020.01.01. ~ 12.31	2021.01.25. ~ 03.07	미실시	

※ 정산검사 미실시 보조사업 : 별첨

그런데, 영동군 주민복지과에서는 위 현황의 “2020 ○○○○○○○○○○○ ○○○○ 지원사업(○○○ 단체 관련 13개 사업)”을 보조사업자들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검사를 미실시 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을 소홀히 하였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의견없음

신분상 처분

1. 대상자 지방○○○○○○○○○○ ○○○○
2. 종 류 훈계
3. 사 유

지방○○○○○○○○○○ ○○○○은 2019. 8. 1. ~ 2021. 10. 5.까지 실무자로서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사업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실무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1. 위 지방○○○○○○○○○○ ○○○○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2.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검사가 미실시 한 13개 사업을 정산검사 하시고, 집행잔액 발생시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보조사업 정산검사 미 실시 보조사업 목록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보조단체	총계	보조금	집행액	잔액	정산서 제출일	정산일
주민 복지과	○○○○○○○○○○○○○ ○○○지원사업(2020)	-	34,810	34,800	34,800	-	2021-01-25	미시행
		-	5,640	5,640	5,640	-	2021-02-04	
		-	7,440	7,440	7,440	-	2021-01-27	
		-	5,740	5,740	5,740	-	2021-02-04	
		-	1,800	1,800	1,800	-	2021-01-27	
		-	1,800	1,800	1,800	-	2021-01-27	
		-	1,800	1,800	1,800	-	2021-01-27	
		-	1,680	1,680	1,680	-	2021-01-27	
		-	1,920	1,640	1,640	-	2021-03-07	
		-	1,800	1,800	1,800	-	2021-03-07	
		-	1,920	1,920	1,920	-	2021-03-07	
		-	16,560	16,560	16,560	-	2021-02-03	
		-	6,520	6,710	6,710	-	2021-01-27	

처 분 요 구 서(30)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추진 소홀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건설교통과, 신활력과, 재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에서는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서는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비는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동군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 2020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자동제어반 구축 관급자재 구입 및 교통신호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 등을 추진하

였다.

〈표 1〉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추진 소홀

(단위:천원)

연번	회계년도	편성목 (통계목)	사업명	예산 집행액	비고
계				87,023	
1	2019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 자동제어반 구축 관급자재 구입	43,830	
2	2020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 자동제어반 구축 관급자재 구입비 지급	40,660	
3	2020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교통신호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비 지급	2,533	

※ 정산검사 미 실시 보조사업 : 별첨

영동군 건설교통과 등에 따르면 <표 1>의 자동제어반 구축 관급자재 구입사업과 교통신호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건의 관급자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년 정도를 교체 주기로 한다.

그런데, 영동군은 ‘○○○○ 및 ○○○○ ○○○○○○○○ 자동제어반 구축 관급자재 구입, ○○○○○○○ 교통신호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을 추진하면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영동군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는 시설비로 계상하여 집행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예산 편성 및 집행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31)

시 정 요 구

제 목 문화분야 민간위탁사무 감사 미 실시 등 업무추진 소홀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국악문화체육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효율적인 문화·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을 근거로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0조(사무편람)에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21조(처리상황의 감사)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동군에서는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하여 <표 1>의 민간위탁사무(영동 ○○○○, 영동○○○○ ○○○ 등)의 효율적 운

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편람 작성 여부 및 승인을 하였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였어야 했다.

<표 1> 민간위탁 사무 업무처리 소홀 현황

(단위:천원)

연 도	사 업 명	수탁자	민간위탁 지원액	감사실시 여부	편람 작성 및 승인 여부
계	3개 사업		290,390		
'19	영동 ○○○○ 운영	○○○○○	82,500	부	부
'20			86,860		
'21			90,430		
'19	영동 ○○○○ ○○○○운영	○○○○○○○○○○	-		
'20			-		
'21			12,600		
'21	○○○ ○○○○○○ 운영	○○○○○○○○○	18,000		

그런데 영동군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무편람 작성, 관리, 승인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의견없음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 (시정)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수탁자에게 사무 편람을 작성, 관리 승인 등을 하도록 하시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32)

시 정 요 구

제 목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직권부과 누락

소관기관 영 동 군

조치부서 재 무 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재무과에서는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개수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각종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8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동군에서는 위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취득세를 적정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세자료제출 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 내역, 상속재산 내역, 건축물 신·증축자료, 대법원통보자료, 지목변경 내역, 지하수 시설 등의 과세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확인·대사하여 신고·납부가 없는 경우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2020. 0. 00. '○○읍 ○○리 000-00번지 외 6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상속인 "○○○ 외 4인"에게 취득세 1,640,3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60건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농특세 등 포함) 24,757,7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2) 급·배수시설(지하수시설 : 관정) 취득세 직권부과 누락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지하수시설 : 관정) 시설을 2022. 0. 00. '○○면 ○○리 000번지'에 취득하고도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에 대해서 취득세 35,3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22건의 지하수 시설에 대한 취득세(농특세 포함) 2,783,3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3) 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취득세 과세대상인 신축 및 증축 건축물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련부서로부터 확인하고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읍 ○○리 000-0번지 증축 00.00㎡’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2020. 00. 00. 취득하고도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에 대한 취득세 965,7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는 등 4건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농특세 등 포함) 5,690,4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4) 임시용(가설)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임시홍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 과세대상인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용(가설) 건축물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련부서로부터 확인하고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 ○○리 000-0번지 임시용(가설)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80,9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는 등 21건의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농특세 포함) 10,838,2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5)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누락

2019. 0. 0. ‘○○읍 ○○리 000-00번지 000㎡’에 대한 지목 “과수원”을 “대지”로 사실상 변경함에 따라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에게 취득세 190,5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15건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농특세 포함) 9,292,9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취득세 부과 누락 현황

(단위 : 원)

연번	과 세 구 분	건수	합계	부과 누락 세액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계	5종	122	53,362,700	49,296,360	2,962,820	1,103,520
1	상 속 재 산	60	24,757,700	23,062,300	841,270	854,130
2	지 하 수 시 설	22	2,783,360	2,556,690	226,670	-
3	신 축 · 증 축	4	5,690,460	5,130,390	310,680	249,390
4	임 시 용 건 축 물	21	10,838,280	9,988,280	850,000	-
5	지 목 변 경	15	9,292,900	8,558,700	734,200	-

※ 위 금액은 추후 과세자료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의견없음

조치할 사항 영동군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위 현황(<표 1> 취득세 부과 누락 현황)과 같이 직권부과 누락된 취득세 등 총 53,362,700원을 추징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대사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33)

시 정 요 구

제 목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징 누락

소관기관 영 동 군

조치부서 재 무 과

내 용

1. 업무개요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탁·위임 등)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도세 부과·징수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영동군에서는 취득세 등 도세 감면사무(사후관리 포함)를 처리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해
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
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
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100분의 75 경감)하고,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조례 +25%)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르면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동군에서는 자경농민, 귀농인, 농업법인,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이 취득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였을 때에는 그 유예기간 중에 매각 또는 해당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감면조건 이행실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세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1) 자경농민 감면조건 위반(유예기간 내 매각) 취득세 추징 누락

2020. 0. 00. ‘○○○’이 ‘○○면 ○○리 000번지 토지’를 자경농민의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2022. 0. 00.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추정 대상이 되었으나, 기경감한 취득세 978,000원(가산세 포함)을 추정하지 아니하는 등 자경농민 감면조건을 위반한 10건에 대한 취득세(농특세 등 포함) 7,546,750원(가산세 포함)을 추정하지 아니하였다.

2) 귀농인 감면조건 위반(유예기간 내 매각) 취득세 추정 누락

2019. 0. 0. ‘○○○’가 ‘○○면 ○○리 000-0번지 토지’를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의 농지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2022. 0. 00.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추정 대상이 되었으나, 기경감한 취득세(농특세 등 포함) 692,090원(가산세 포함)을 추정하지 아니하였다.

3) 농업회사법인 감면조건 위반 취득세 추정 누락

2020. 00. 0. ‘○○면 ○○리 산00-0번지 토지’를 취득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한 재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일부 면적(0,000㎡)을 ‘○○면 ○○리 산00-0번지 토지’로 분할 후 매각하여 추정 대상이 되었으나, 기경감한 취득세(농특세 등 포함) 201,610원(가산세 포함)을 추정하지 아니하였다.

4) 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조건 위반(유예기간 내 직접 미사용) 취득세 추정 누락

2018. 00. 00. ‘○○면 ○○리 000번지’ 공장부지를 취득한 “농업회사법인 ○○(주)’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재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정 대상이 되었으나, 기경감한 취득세(농특세 등 포함) 10,171,120원(가산세 포함)을 추정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취득세 추정 누락 현황

(단위 : 원)

연번	감 면 구 분	건수	합계	추정 누락 세액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계		13	18,611,570	17,827,090	-567,920	1,352,400
1	자 경 농 민	10	7,546,750	6,445,620	726,100	375,030
2	귀 농 인	1	692,090	616,070	30,350	45,670
3	농 업 법 인	1	201,610	178,940	7,540	15,130
4	산 업 단 지	1	10,171,120	10,586,460	-1,331,910	916,570

※ 위 금액은 추후 과세자료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의견없음

조치할 사항 영동군에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위 현황(<표 1> 취득세 추정 누락 현황)과 같이 직권부과 누락된 취득세 등 총 18,611,570원을 추징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납세자가 취득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였을 때에는 그 유예기간 중에 매각 또는 해당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감면 이행실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34)

주 의 요 구

제 목 영동○○○○○○○ 예산 집행 관리 소홀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주민복지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영동○○○○○○○(이하 “○○○○○○○”라고 한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군수는 매년 또는 격년으로 ○○○○○○○○ 평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을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 협회비는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집행토록 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공고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1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에 따르면 협회비는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동○○○○○○ 예산(협회비 납부) 집행 관리 소홀

○ 영동○○○○○○ 협회비 납부 현황(2019. 6. ~ 2021. 12.)

(단위 : 천원)

집행일자	집행금액	집행과목	집행내용	적정 집행과목	비고
계	11,550				
'19.06.28.	1,050	업무추진비	'19년 2분기 한국○○○○○○ 협회비 납부	(공공요금 및 운영비 제세)	
'19.08.23.	1,050	업무추진비	'19년 3분기 한국○○○○○○ 협회비 납부	(공공요금 및 운영비 제세)	
'19.10.25.	1,050	업무추진비	'19년 4분기 한국○○○○○○ 협회비 납부	(공공요금 및 운영비 제세)	
'20.09.18.	1,050	업무추진비	'20년 3분기 한국○○○○○○ 협회비 납부	(공공요금 및 운영비 제세)	
'20.10.28.	3,150	업무추진비	'20년 1·2·4분기 한국○○○○○○ 협회비 납부	(공공요금 및 운영비 제세)	
'21.03.10.	1,050	업무추진비	'21년 1분기 한국○○○○○○ 협회비 납부	(공공요금 및 운영비 제세)	
'21.04.13.	1,050	업무추진비	'21년 2분기 한국○○○○○○ 협회비 납부	(공공요금 및 운영비 제세)	
'21.07.15.	1,050	업무추진비	'21년 3분기 한국○○○○○○ 협회비 납부	(공공요금 및 운영비 제세)	
'21.10.07.	1,050	업무추진비	'21년 4분기 한국○○○○○○ 협회비 납부	(공공요금 및 운영비 제세)	

영동○○○○○○에서는 한국○○○○○○로 매월 350천원의 협회비를 납부함에 있어 2019. 6. ~ 2021. 12.까지 협회비 총 11,550천원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운영비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였어야 하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여 세출예산 집행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영동군 주민복지과는 ○○○○○○의 예산 지출 건에 대해 지도·점검 및 정산 과정을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설 예산 집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영동군 주민복지과에서는 “○○○○○○의 협회비 총 11,550천원을 업무추진비에서 부적정 집행하여 2022년부터는 적정하게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향후 반복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 주민복지과는 ○○○○○○에서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예산회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35)

시 정 요 구

제 목 어린이집 종사자 4대보험료 납부 관리 소홀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가족행복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가족행복과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를 통하여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 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동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에 따라 사회

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같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고,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어린이집 종사자 4대보험료 납부 관리 소홀

○ ●●●●●●어린이집 종사자 4대보험료 납부 및 연체 현황

(단위 : 원)

부과월	납기일자	납부일	납부금액					연체금	비고
			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			131,779,750	57,822,000	53,341,140	13,354,770	5,550,400	1,927,910	
'19.04	19.05.10.	19.05.13.	3,870,690	1,513,280	1,696,140	424,180	219,090	0	
'19.05	19.06.10.	19.05.23.	3,587,330	1,531,280	1,538,240	340,080	177,730	0	
'19.06	19.07.10.	19.06.26.	3,616,120	1,506,000	1,584,540	345,180	180,400	0	
'19.07	19.08.10.	19.07.22.	3,661,000	1,576,920	1,558,500	345,180	180,400	0	
'19.08	19.09.10.	19.08.23.	3,266,500	1,415,280	1,384,280	306,670	160,270	0	
'19.09	19.10.10.	19.09.24.	3,768,240	1,609,140	1,645,020	337,610	176,470	0	
'19.10	19.11.10.	19.11.30.	3,832,020	1,609,140	1,645,020	401,870	175,990	72,780	
'19.11	19.12.10.	19.12.23.	3,832,020	1,609,140	1,645,020	401,870	175,990	49,780	
'19.12	20.01.10.	20.12.23.	2,487,130	1,086,160	1,014,840	268,530	117,600	32,300	
'20.01	20.02.10.	20.02.25.	2,808,430	1,086,160	1,289,600	295,450	126,360	30,040	
'20.02	20.03.10.	20.05.04.	2,975,610	1,278,400	1,194,820	352,060	150,330	76,320	
'20.03	20.04.10.	20.05.26.	3,003,990	1,278,400	1,299,720	327,850	98,020	29,450	
'20.04	20.05.10.	20.06.25.	2,364,720	1,278,400	612,740	358,430	115,150	13,770	
'20.05	20.06.10.	20.09.01.	2,796,140	1,278,000	1,096,160	324,540	97,040	31,600	
'20.06	20.07.10.	20.09.24.	3,545,360	1,558,300	1,478,700	391,340	117,020	122,370	
'20.07	20.08.10.	20.10.30.	3,565,000	1,662,140	1,418,860	372,590	111,410	110,530	
'20.08	20.09.10.	20.12.10.	3,545,440	1,662,140	1,418,860	357,530	106,910	129,120	
'20.09	20.10.10.	21.01.05.	3,591,210	1,662,140	1,418,860	357,530	152,680	126,580	
'20.10	20.11.10.	21.01.10.	3,591,210	1,662,140	1,418,860	357,530	152,680	149,350	
'20.11	20.12.10.	21.11.01.	3,591,210	1,662,140	1,418,860	357,530	152,680	128,970	
'20.12	21.1.10.	21.11.01.	3,302,050	1,662,140	1,178,640	323,250	138,020	99,030	
'21.01	21.02.10.	21.08.27.	3,221,260	1,474,400	1,276,240	333,570	137,050	83,820	
'21.02	21.03.10.	21.08.27.	3,650,490	1,649,000	1,491,680	361,340	148,470	86,710	
'21.03	21.04.10.	21.04.23.	3,718,990	1,649,000	1,542,060	374,190	153,740	15,160	
'21.04	21.05.10.	21.05.26.	3,831,860	1,823,600	1,444,460	399,610	164,190	20,950	
'21.05	21.06.10.	21.07.02.	4,035,960	1,823,600	1,648,560	399,610	164,190	34,600	
'21.06	21.07.10.	21.11.01.	4,035,960	1,823,600	1,648,560	399,610	164,190	72,650	
'21.07	21.08.10.	21.11.01.	4,005,470	1,768,820	1,666,660	404,000	165,990	61,560	

부과월	납기일자	납부일	납부금액					연체금	비고
			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1.08	21.09.10.	21.11.01.	4,005,470	1,768,820	1,666,660	404,000	165,990	49,000	
'21.09	21.10.10.	21.11.01.	4,054,850	1,813,720	1,671,000	404,110	166,020	29,850	
'21.10	21.11.10.	21.11.01.	4,073,790	1,813,720	0	407,500	167,390	0	
'21.10	21.11.10.	21.11.25.	1,685,180	0	1,685,180	0	0	16,840	
'21.11	21.12.10.	22.01.10.	4,056,600	1,813,720	1,672,400	404,350	166,130	45,220	
'21.12	22.01.10.	22.01.28.	4,080,160	1,804,740	1,698,920	410,810	168,690	27,320	
'22.01	22.02.10.	22.03.17.	4,156,460	1,801,740	1,746,480	431,120	177,120	86,570	
'22.02	22.03.10.	22.04.07.	4,556,180	1,986,500	1,920,560	460,130	188,990	85,010	
'22.03	22.04.10.	22.04.15.	4,009,650	1,820,180	1,605,440	414,020	170,010	10,660	

●●●●●어린이집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나 2019. 10. ~ 2022. 3.까지 기한 후 납부하여 발생한 연체료에 대해 자부담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가족행복과는 해당 어린이집의 예산 지출 건에 대해 지도·점검 및 정산 과정을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설 예산 집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 가족행복과에서는 ●●●●●어린이집 시설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된 어린이집 종사자 4대보험 연체금 1,927,910원에 대해 시설회계로 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어린이집에서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예산회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36)

주 의 요 구

제 목 장애인 자동차 공동소유주 세대분리 확인업무 소홀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주민복지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군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읍·면·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동명의로 간의 세대(주소) 분리가 된 경우 주소를 분리한 사유 등을 확인하고

차량의 주 운전자가 장애인이거나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병원진료, 재활치료 등을 위해 정기적·지속적으로 자동차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검토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유지 또는 회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할 수 없으나 가족(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끼리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발급을 허용하고 있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장애인 자동차 공동소유주 세대분리 확인업무 소홀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변동사항 미처리 현황

연번	변동일자	대상자	표지번호	장애유형	장애등급	변동사항	읍면동	비고
1	'20.04.27.	○○○	***** *****	지체 (척추)	심하지 않은 장애	공동소유주 주소 상이	영동읍	
2	'20.05.29.	◎◎◎	***** *****	뇌병변	심한 장애	공동소유주 주소 상이	상촌면	
3	'20.10.23.	◇◇◇	***** *****	지체 (상지기능)	심한 장애	공동소유주 주소 상이	영동읍	
4	'21.05.28.	□□□	***** *****	지체 (하지기능)	심하지 않은 장애	공동소유주 주소 상이	심천면	
5	'22.02.07.	△△△	***** *****	지체 (하지관절)	심하지 않은 장애	공동소유주 주소 상이	영동읍	

영동군(읍·면)은 행복e음을 통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변동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

그러나 영동군(영동읍·심천면·상촌면)은 각각 2020년 3회(영동읍·상촌면), 2021년 1회(심천면), 2022년 1회(영동읍) “공동 소유주 주소 상이”라는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아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영동군 주민복지과에서는 “읍·면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차 표지 변동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변동 사실을 확인하고 적기에 전산상 처리를 하며, 주민복지과에서는 미처리 현황을 정기적 관리하여 업무 처리 지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읍·면)은 행복e음을 통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변동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37)

주 의 요 구

제 목 영동군○○○○○○○○ 비지정후원금 집행 관리 소홀
소관기관 영동군
조치부서 주민복지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동군 주민복지과는 「영동군 ○○○○○○○○ 지원 조례」 제3조 및 4조에 따라 영동군○○○○○○○○를 지원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동군○○○○○○○ 비지정후원금 집행 관리 소홀

○ 영동군○○○○○○○ 수당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집행일자	집행금액	예산과목	집행내용	비고
계	2,700			
'21.08.30.	300	인건비(제수당)	종사자 식대비 수당 지급(50천원/1인 × 6명)	비지정 후원금
'21.09.29.	300	인건비(제수당)	종사자 식대비 수당 지급(50천원/1인 × 6명)	비지정 후원금
'21.10.29.	300	인건비(제수당)	종사자 식대비 수당 지급(50천원/1인 × 6명)	비지정 후원금
'21.11.29.	300	인건비(제수당)	종사자 식대비 수당 지급(50천원/1인 × 6명)	비지정 후원금
'21.12.23.	300	인건비(제수당)	종사자 식대비 수당 지급(50천원/1인 × 6명)	비지정 후원금
'22.01.28.	300	인건비(제수당)	종사자 식대비 수당 지급(50천원/1인 × 6명)	비지정 후원금
'22.02.25.	300	인건비(제수당)	종사자 식대비 수당 지급(50천원/1인 × 6명)	비지정 후원금
'22.03.28.	300	인건비(제수당)	종사자 식대비 수당 지급(50천원/1인 × 6명)	비지정 후원금
'22.04.25.	300	인건비(제수당)	종사자 식대비 수당 지급(50천원/1인 × 6명)	비지정 후원금

영동군○○○○○○○(이하 “○○○”라고 한다)는 종사자에게 식대비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2021년 8월 ○○○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식대비 수당을 신설하여 종사자 6명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식대비 수당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 외의 수당이므로 협의회 종사자 6명에게 식대비수당을 지원하고자 했다면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라 영동군 주민복지과와 협의하여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는 ○○○ 이사회의 승인만을 거쳐 2021. 8. ~ 2022. 4.까지 종사자 6명에게 식대비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주민복지과는 ○○○의 예산(보조금 등) 지출 건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설 예산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 주민복지과는 영동군○○○○○○○○(이하 “○○○”라고 한다)에서 후원금 지출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회 회계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39)

주 의 요 구

감사자 : ○○○

제 목 2022년 ○○군 안전관리계획 수립업무 소홀

소관기관 ○○군

조치부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9조에 따라 ○○군의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적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확정하고 있다.

<표1> ○○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내역('19 ~ '22)

(2022.5.9.현재)

년 도	2019	2020	2021	2022	비고
확정일 (심의일)	2019.2.26. (2019.2.19.~26.)	2020.2.25. (2020.2.10.~25.)	2021.2.18. (2021.2.13.~18.)	2021.4.29. (2021.3.28.~4.29.)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도에서 통보¹⁴⁾ 받은 수립지침과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군에서는 <표1>과 같이 '22. 3. 28.에 심의를 개최하여 법에서 정한 기일인 2월 말일에서 60일이 경과한 '22. 4. 29.에서야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였으며, '풍수해 대책' 등 40개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산사태 대책' 부문에서 과거 산사태 피해 발생 건수(2018년 4건, 2020년 1건)를 기재하지 않았고, '산불대책' 등 6개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계획의 수립지침을 도에서 통보받았음에도 수립지침 상,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작성부서 관리자를 작성하지 않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현부서에 없는 관리자를 기재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부서 관리자의 현행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군에서는 관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다슬기 채취 중에 익사자가 <표2>와 같이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다슬기 채취 중 위험성 및 익사, 익수에 대한 내용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특히, ○○군 ▼▼면 ○○리~○○리 일원에서는 2015년~2020년까지 다슬기 채취 중 5명의 익사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등 ○○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14) 충청북도 안전정책과-69호(2022.1.4.) '2022년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충청북도 안전관리계획 알림'

〈표2〉 다슬기 채취 중 익사자 현황 ('15 ~ '22)

(2022.5.9.현재)

연도 읍·면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 고
계	11	2	3	1	2	1	2	
△▲면	1	1						◎●천(지방하천)
▽◇면	1		1					◎●천(지방하천)
◇◇면	1		1					◎●천(지방하천)
◎◎면	1		1					◎강(국가하천)
◎○면	1				1			◎강(국가하천)
▼▼면	6	1		1	1	1	2	◎강(국가하천)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상기의 지적된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을 하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업무인 만큼 추후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작성 기한을 반드시 지키겠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충실하게 작성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 ○○●●과에서는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 ○○군의 지역적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하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확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40)

주 의 요 구

감사자 : ○○○

제 목 재해영향평가 협의 지연처리 등 업무 소홀
소관기관 ○○군
조치부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협의부서)에서는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해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의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관계부서는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협의부서에 제출하여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45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부서는 협의내용을 개발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협의부서에 제출하여 협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① 재해영향평가 협의 지연처리

그러나 ○○군 ○○●●과에서는 2019. 10. 31.에 접수된 ‘▼▼면 ○○리 개간산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7일이 경과된 2020. 1. 16.에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등 2019년 5월부터 2022. 5. 9. 감사일 현재까지 <표1>과 같이 총 8건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지연 협의한 사실이 있다.

<표1> 재해영향평가 협의 지연 및 조치계획·결과 제출 지연 현황

[2019. 5 ~ 2022. 5월 현재]

년 도	계	2019	2020	2021	2022	비고
협의건수	22	4	9	5	4	
협의지연	8	1	5	1	1	
제출기간 경과건수	5	2	2	-	1	

* ○○군 제출자료 재구성, 협의 중단, 도 협의 건은 제외

② 조치결과 또는 계획 지연 제출

그리고, 관계부서에서는 협의부서(○○●●과)로부터 협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하여 협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2019. 5. 28.에 협의부서(○○●●과)로부터 통보된 ‘○□△면 ○○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90일이 경과된 2019. 9. 25에 조치계획을 제출하는 등 2019년 5월부터 2022. 5. 9. 감사일 현재까지 <표2>과 같이 총 5건에 대하여 조치계획 등을 지연 제출하였으며, 협의 부서인 ○○●●과에서는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제출 촉구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2〉 재해영향평가 협의 지연 및 조치계획·결과 제출 지연 세부현황

[2019. 5 ~ 2022. 5월 현재]

사 업 명	협의시기			조치결과계획		비고
	접수일	완료일	지연 일수	제출일	지연 일수	
○○군 ○○타운 토석채취	19.5.14.	19.5.28.	-	19.7.22.	25	
○□△면 ○○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19.5.1.	19.5.28.	-	19.9.25.	90	
▼▼면 ○○리 개간사업	19.10.31.	20.1.16.	47	20.2.5.	-	
▲▼면 ○○리 제2종 ○○○○시설 및 ○○부지조성	20.1.2.	20.2.25.	24	20.3.12.	-	
○○지구 소규모 ○○○○개발사업	20.4.13.	20.5.6.	-	20.6.24.	19	
○○리 ○○○○ 신축공사	20.6.30.	20.8.4.	5	20.8.31.	-	
○○리 ○○○○부지조성	20.9.17.	20.10.19.	2	20.11.5.	-	
○○○○공원 조성사업	20.10.5.	20.11.30.	26	20.12.3.	-	
△▲면 ○○리 ○○부지 조성	20.10.21.	20.11.26.	6	21.1.7.	12	
○○지구 소규모○○○○개발사업	21.10.14.	21.11.18.	5	21.12.3.	-	
○○군 ○○리 ○○주택 ○○공사	21.12.15.	22.2.15.	32	22.4.8.	32	
계			8건		5건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군 ○○●●과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시 지연처리 되지 않도록 하시고, 협의부서에서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정해진 시일 내에 제출하여 협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41)

시 정 요 구

감사자 : ○○○

제 목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미공고
소관기관 ○○군
조치부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¹⁵⁾에 대하여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공사완료 시 완료 공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읍 동정리 41-16번지 일원의 ‘○○리(○로3-○○○)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2019. 1. 10. 실시계획을 인가(○○군 고시 제2019-○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표1>과 같이 총 21건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¹⁶⁾을 추진하고 있다.

<표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현황('19 ~ '22)

(2022.5월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추진현황(건)			공사 완료 후 공고 현황(건)		비고
계	추진 중	준공	공고 완료	미 공고	
21	10	11	7	4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 인가한 경우 시·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15)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1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4항 및 시행령 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제2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 해당 시·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사완료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충청북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 담보, 열람 및 고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군 ○□○□과에서는 <표2>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된 ‘○○리(○로3-○○○)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21건 중 공사가 완료된 11건에 대하여 7건은 공사완료 공고하였으나, ‘○○○○○○(○○시설) 신축 사업’ 등 4건에 대하여는 사업이 준공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도시·군계획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을 인가하고도 이의 준공여부를 파악하여 직접 공고하거나 시행자(시행부서)에게 공사완료 공고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않는 등 도시계획시설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현황 세부 내역('19 ~ '22)

시설명	위치	실시계획인가(변경)		사업기간		공사완료 공고		비고
		일자	고시번호	착수일	준공일	일자	공고번호	
○○리 (○로3-○○○)	○○읍 ○○리 41-15	2019.01.10.	2019-○	2019.04.18.	2019.12.04.	2020.01.15.	2020-26	
○○리 (○로3-80)	○○읍 ○○리 376-2	2019.05.15.	2019-○	2019.07.08.	2019.11.04.	2020.01.15.	2020-26	
○○시설: 체육관(체력 단련실)	○○읍 ○○리 313	2019.06.25	2019-○	2019.05.07.	2020.02.19.			공고 미이행
공공시설: ○○	▽◇면 ○○리 192-1	2015.12.11 2019.07.31	2015-○ 2019-○	2017.07.03	2019.01.23.			공고 미이행
공원: ○○○○공원	△▲면 ○○리 172-4	2019.08.16	2019-○	2019.12.16.	2020.05.13.	2020.06.05	2020-671	
○○○처리시설 ○○○소각시설	△▲면 ○리 800번지	2019.09.02	2019-○	2019.09.09.	2026.05.31			미준공
○○시설: 체육관	○○읍 ○○리 745	2019.12.20	2019-○	2020.01.20.	2020.10.30.			공고 미이행
○○○○설비 :○○○	○□△면 ○○리 산27	2019.12.26	2019-○	2020.04.10	2020.04.29	2020.06.19	2020-740	

시설명	위치	실시계획인가(변경)		사업기간		공사완료 공고		비고
		일자	고시번호	착수일	준공일	일자	공고번호	
○○장: ○○○○장	○○읍 ○○리 484-6	2020.01.15	2020-○	2020.09.15	2021.11.19			공고 미이행
○○리 (○로3-10)	○○읍 ○○리 890-10	2020.02.20.	2020-○	2020.04.20.	2020.12.04.	2021.03.05.	2021-229	
○○리 (○로2-81)	○○읍 ○○리 9-4	2020.04.16.	2020-○	2020.04.22.	2021.09.06.			
○○리 (○로2-56)	○○읍 ○○리 90-2	2020.06.26.	2020-○	2021.05.07.	2021.12.31.			
○○리 (○로2-46)	○○읍 ○○리 85-2	2020.06.26.	2020-○	2021.05.07.	2021.12.31.			
○○리 (○로2-44)	○○읍 ○○리 85-2	2020.06.26.	2020-○	2021.05.07.	2021.12.31.			
○○리 (○로2-406)	○○면 ○○리 666-5	2020.06.26.	2020-○	2021.07.15.	2021.12.31.			
○○장:○○ ○○장	○○읍 ○○리 110-1	2020.10.23	2020-○	2020.11.12	2021.04.16	2021.08.20	2021-946	
공공청사:○ ○○청	○○읍 ○○리 210-1	2020.12.28. 2021.12.15	2020-○ 2021-○	2020.12.18	2022.09.20.			미준공
○○설비:○ ○○설비1	○○읍 ○○리 828-87	2021.05.06	2021-○	2021.05.06.	2021.12.10.	2022.01.07	2021-1	
○○시설:○ ○○시설	○○읍 ○○리 125-2	2021.06.15. 2021.09.10.	2021-○ 2021-○	2022.01.04.	2024.01.09.			미준공
○○시설:○ ○○장	○○읍 ○○리 산35-1	2021.07.30. 2021.12.27	2021-○ 2021-○	2021.08.02.	2023.04.30.			미준공
공공청사:○ ○○청	○○읍 ○○리 210-1	2022.01.05	2022-○	2021.12.22	2022.06.21.			미준공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숙지미흡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의 충실한 연찬으로 실시계획 관련 제반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군 ○□○□과에서는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조속히 공고를 하고, 향후 군계획시설사업 업무 처리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42)

주 의 요 구

감사자 : ○○○

제 목 일상감사 대상사업의 일상감사 미실시 등 업무 소홀
소관기관 ○○군
조치부서 ○□○□○□과, ○○□○과, △△과, ○○●●과, ○□소,
△△△○○소, □○□○소
내 용

1. 업무개요

○○군에서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 업무를 「○○군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하며,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군 일상감사 규정」 제3조(일상감사 대상 및 범위)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르면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초과하거나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에서 10퍼센트 이상이 증액되는 계약에 대해 일상감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군 ○□○□○□과 등 7개 과·소에서는 <표1>과 같이 ‘◎●천 ○○장 ○○○○○ ○○도로 개설공사’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였다. 이로 인해 일상감사를 통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등 일상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설계변경에 따른 일상감사 미 실시 현황

부서명	사 업 명	설계변경일	당초도금액 (천원)	변경도금액 (천원)	증가액(천원) 증가율(%)	일상감사 실시여부
계	25개 사업					
○□○□ ○□과	◎●천 ○○장 ○○○○○ ○○도로 개설공사	'21.09.08.	1,446,486	1,706,309	259,823 (증17.3%)	부
"	○○산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사업	'20.12.11.	445,983	583,778	137,795 (증30.8%)	부
"	○○산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사업 휴게음식점 및 화장실 신축공사	'20.12.22.	676,897	987,091	310,194 (증45.8%)	부
○○□○과	○○군 장애인보호작업장증 축공사	'19.09.27.	647,040	738,592	91,552 (증14.1%)	부
△△과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9.06.21.	712,912	1,032,600	319,688 (증40.9%)	부
"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9.10.18.	1,373,448	1,871,230	497,782 (증34.0%)	부
"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9.12.02.	1,404,989	1,580,600	205,611 (증15.0%)	부
"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9.10.01.	6,112,837	6,871,854	759,017 (증12.4%)	부
"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1.06.24.	2,787,979	3,092,126	304,147 (증10.5%)	부
"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1.06.24.	679,563	895,334	215,771 (증29.7%)	부
○○●●과	○○○소하천정비사 업 실시설계용역	'19.12.18.	60,863	99,710	38,847 (증63.8%)	부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9.12.18.	61,475	99,720	38,245 (증62.2%)	부

부서명	사 업 명	설계변경일	당초도금액 (천원)	변경도금액 (천원)	증가액(천원) 증가율(%)	일상감사 실시여부
○○●●과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1.11.15.	97,110	130,490	33,380 (증34.4%)	부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2.03.28.	120,868	142,830	21,962 (증18.2%)	부
	각계 ○○○○○○개선키 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9.12.06.	161,911	273,370	111,459 (증68.8%)	부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09.21.	59,541	84,305	24,764 (증41.6%)	부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전체분)	'19.09.05.	859,732	948,530	88,798 (증10.1%)	부
○□소	○○군립노인전문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건축)	'21.08.17.	733,575	806,770	73,195 (증10.0%)	부
△△△○○ 소	▼▼면 ○○리(○○,○○) 지방상수도공급사업	'20.12.17.	471,579	522,471	50,892 (증10.8%)	부
□○□○소	○○○○○ ○○센터건립사업(전기)	'21.12.20.	627,240	705,609	78,369 (증12.0%)	부
"	○○○○○ ○○센터건립사업(소방)	'20.08.13.	558,808	666,064	107,256 (증18.4%)	부
"	○○○○○ ○○관광지 기반시설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20.08.18.	986,134	1,132,139	146,005 (증14.3%)	부
"	○○○○○ ○○공원 연결도로 구축사업	'21.11.10.	2,094,763	2,673,081	578,318 (증27.3%)	부
"	○○○ ○○○○ ○○타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9.11.18.	1,600,710	1,998,870	398,160 (증24.9%)	부
"	○○○단지조성사업 건축감리용역	'19.07.11.	174,034	236,261	62,227 (증35.8%)	부

※ ○○군 제출 자료 재구성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관련 법규 숙지 등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설계변경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사업의 설계변경 적정성, 타당성 확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상감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43)

시 정 요 구

감사자 : ○○○

제 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해제 업무 소홀
소관기관 ○○군
조치부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 관내 32개소를 지정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공원 등 분야별 담당부서에서 급경사지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 및 정비사업 등 실무담당을 하고 있다.

<표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현황

[2019. 5 ~ 2022. 5월 현재]

구 분	계	2019년 이전	2020	2021	2022	비고
지정	32	30	-	1	1	
지정해제	3	-	-	3*	-	
누계	29	30	30	28	29	

* 지정해제 : ○○지구, ○○○3지구, ○○○4지구

2. 관계법령(판단기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제7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군 건설교통과에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3개 지구(○○, ○○○3, ○○○4)에 대해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2021. 6. 15.에 총괄관리부서인 ○○●●과에 지정 해제를 요청함에 있어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총괄 관리부서인 ○○●●과에서는 ●●○○과로부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요청을 받을 때,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내용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과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요청하거나 ○○●●과에서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군 공고 제2021-○○호, 2021. 9. 24.) 및 지정 해제 고시(○○군 고시 제2021-○○호, 2021. 11. 5.)한 사실이 있다.

〈표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세부내역

[2022. 4월말 기준]

지구명 / 위치	지정내용			지정해제		비고
	유형	등급	지정일	해제사유	해제일	
○○ / ○○읍 ○○리 산77-3	붕괴위험	D	2014.9.17.	정비사업 완료에 다른 재해위험 해소	21.11.5.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미실시
○○○○3 / ○○면 ○○○리 산14-4	붕괴위험	D	2014.9.17.			
○○○○4 / ○○면 ○○○리 산14-2	붕괴위험	D	2014.9.17.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관련 법규 숙지 등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 건설교통과에서는 ○○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고, ○○●●과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해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44)

주 의 요 구

감사자 : ○○○

제 목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소홀
소관기관 ○○군
조치부서 □○□○소
내 용

1. 업무개요

○○군 □○□○소에서는 ○○읍 매천리 일원 ○○레인보우 힐링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5. 2. 2. (주)○○ ○○○과 계약 체결하고 2015. 2. 5.에 착수하여 2020. 3. 31.에 준공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제4장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의 다) 및 라)에 따르면 신기술·특허공법을 공사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용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 완료 전에 신기술·특허의 심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군 □○□○소에서는 ‘○○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준공(2020.3.31.) 이후인 2020. 9. 16.에 신기술·특허 공법 심의를 하였고, 2020. 11. 25.에서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등 신기술·특허 선정 절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1> 신기술·특허공법 설계 준공 후 심의 및 사용협약 체결

공사명 (도급자)	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신기술·특허		심의일자 (협약일)	설계 준공일자	미준수 사항
			명칭	금액 (천원)			
○○○○지구 ○○사업* (○○○○○○○) * '○○ ○○○○ ○○○○'내 사업임	9,347,688	19.2.11. ~ 21.1.30.	- 여과카트리 지 및 이를 이용한 비점 오염 처리시 설	580,247	'20. 9. 16. ('20.11.25.)	'20.3.31.	설계 준공 후 공법심의 및 협약체결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실시설계 용역 후 관련 공법 자재 설치 전 공법심의를 하고자 한 사항으로 관련법령 숙지 미흡에 따라 발생한 사항이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분상처분

1. 대상자 □○□○소(현 ○□○□과) 시설주사보 백윤성
2. 종 류 훈계
3. 사 유

지방시설주사보 ○○○은 2019. 3. 2. ~ 2020. 7. 9.까지 ‘○○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담당자로 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면서 공정성 확보 및 특정업체에 특혜가 제공되지 않도록 내부 선정 절차 등을 설계완료 전에 검토 및 시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위 지방시설주사보 ○○○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군 □○□○소에서는 신기술·특허 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과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의 제·개정 사항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기준을 위배하여 설계준공 후 심의 및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45)

주 의 요 구

감사자 : ㉸㉸㉸

제 목 폐수배출업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기준적용 소홀

소관기관 ㉸㉸군

조치부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행정처분)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3과 같다고 되어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 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2와 같다고 되어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개정 2019.10.17.)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개정 2019.10.17.) 제1호 다목에 따르면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개정 2019.10.17.) 제2호 가목 비고 6.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9)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50퍼센트(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군 ㉡㉡과는 2022. 1. 7. ㉠㉠군 ㉠㉠읍 ㉠㉠㉠로 0000 소재 ㉡㉡주유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시(방류수 채수) 수질오염물질의 부유물질(SS) 항목이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부유물질(SS) 147.4mg/L(기준 40mg/L)]하여 2022. 1. 17.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1차-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방류수가

폐수배출허용기준을 268.5퍼센트 초과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2차-개선명령’으로 처분했어야 하나, ‘1차-개선명령’으로 잘못 처분한 사실이 있다.

[표1] ●●주유소 행정처분 부적정 현황

업소명	점검일 (채수일)	위반내용 (배출농도/기준, mg/L)	초과율	행정처분일	기존 행정처분	올은 행정처분
●●주유소	'22.01.07.	배출허용기준 초과(SS) (147.4 / 40)	268.5%	'22. 1. 17.	개선명령 (1차)	개선명령 (2차)

※ ㉠㉡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2]「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가목(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 발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나)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2조제1항제1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5일

관련자 주장 및 판단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기준적용 업무 소홀 건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행정처분 시 법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조치할 사항

㉠㉡군 ●●과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 적용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46)

주 의 요 구

감사자 : ㉸㉸㉸

제 목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업무 소홀

소관기관 ㉸㉸군

조치부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허가 및 피해방지단 운영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허가기준은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해야 하고,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II. 2. 가.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상황·가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 피해현황을 신속히 조사하되, 필요시 야생동물 전문가 지역수렵인 등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군 ㉢㉣과는 2019. 7월부터 2022. 5월까지 주민들이 제출한 223건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신청에 대하여 포획허가를 내주면서 그 중 ‘19.12.9. 송태호 등 26건에 대하여 현지 피해조사를 하지 않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 적정여부, 포획 외 다른 피해 억제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 허가기준을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다.

[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현황

구분		합계	‘19.7~12월	‘20년도	‘21년도	‘22.1~5월
포획허가건수		223	81	59	79	4
－ 현지조사	여	197	73	48	72	4
	부	26	8	11	7	0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시 신청건마다 현장확인을 하여야 했으나, 업무 소홀로 현장점검을 제대로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포획허가 신청 접수 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조치할 사항

㉠㉡군 ㉢㉣과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포획허가를 내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47)

시 정 요 구

감사자 : ㉠㉡㉢

제 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연간 점검계획 미수립 등 관리 소홀

소관기관 ㉠㉡군

조치부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양오염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2(보고 및 검사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¹⁾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특정토양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670호, ‘20.3.4.)」 “제4장 관리대상시설의 점검”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관할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점검²⁾을 실시하여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준수 여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토양오염검사의 적정 실시 여부, 토양오염물질 저장·취급·사용시설의 오염물질 적정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익년도 1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점검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시설을 말함.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은 대상사업장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우수관리(1회/2년), 일반관리(1회/1년), 중점관리(상·하반기 각1회) 실시.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군 ㉢㉣과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 신고 준수 여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토양오염검사의 적정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점검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 ㉢㉣과는 2019년부터 2022. 5월 감사일 현재까지 [표]와 같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 수립,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현황

구분	기준	연도별 실시현황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54	51	51	47
계획수립	매년 2월까지 수립	미수립	미수립	미수립	미수립
정기점검	1회/2년 ~ 2회/년	미점검	미점검	미점검	미점검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련자 주장 및 판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연간 점검계획 미수립 등 관리소홀 건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 간 열악한 지도점검 인력 운영으로 인해 해당업무에 대해 소홀하였음을 인정하며 향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확인합니다.

조치할 사항

㉠㉡군 ㉢㉣과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48)

시 정 요 구

감사자 : ㉸㉸㉸

제 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관리 소홀

소관기관 ㉸㉸군

조치부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리업무를 행하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9.4.8.)의 III.1.다.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관항 사항)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제작시 검수는 검수공무원이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 (검사재료=종량제 봉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검체 채취는 “종량제 봉투 검체 채취 및 판정기준”에 따라 봉투 제작업체로부터 제작 완료를 통보 받은 후 검수 공무원은 계약된 물품 전량을 인수하여 관리가 가능한 창고에 입고시킨 후 지체 없이 검체를 채취하고, 납품된 물품은 시험분석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봉투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검수공무원은 시료를 개봉이 불가능한 봉투 등에 담아 봉인한 후 직접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그 결과를 직접 통보 받아야 하며, 유통중인 봉투에 대한 부정기 검체 수거 및 분석을 실시하여 종량제 봉투의 품질관리 및 불법 유통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9.4.8., 2022.1.10.)의 III.1.다.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는 종량제봉투 제작기간 중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해야하며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해야 한다. *제작일지 : 제작 시·종료시간, 일일 생산량, 봉투 불량 발생량, 점검자 성명 등을 기재하되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제작 사용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2.23.선고, 2005도7430 판결)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자치단체장 명의의 공문서로 보고 있으므로 군의 상징 등이 포함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한 동판은「㉠㉡군 공인조례」에 따른 일종의 공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으로 ㉠㉡군 ㉢㉣과에서는 인쇄원판(동판)을 공인과 같이 철저히 관리하고, 종량제 봉투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회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9.4.8., 2022.1.10.)의 III.1.라. (종량제 봉투의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마대) 판매소는 지역 주민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부착해야한다.

또한,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 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종량제봉투 동판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 소홀>

㉠㉡군 ㉢㉣과는 아래 [표1]과 같이 감사대상 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연간 3~7회 총 16회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면서, 제작을 위한 인쇄원판 불출대장 및 제작업체와의 인쇄원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 동판의 불출내역을 알 수 없으며(2019~2021년),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 제작업체를 수시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고,

종량제 봉투 검수시 검수공무원이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함에도 납품 전에 제작업체에서 채취하여 시험·검사받은 후 발급받은 성적서로 종량제 봉투의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기적인 검체 수거 및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종량제 봉투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현황

연도별	제작횟수 (제작매수)	직접 검체 검수 여부	부정기 검체 여부	비고
합계	16회 (6,572,000매)			
2019	3회 (1,435,000매)	부	부	
2020	3회 (1,247,000매)	부	부	
2021	7회 (1,867,000매)	부	부	
2022. 1~5월	3회 (2,023,000매)	부	부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 관리 소홀>

또한, ㉠㉡군 ㉢㉣과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소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 2] ㉠㉡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점검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점검실적/점검대상	0 / 98	0 / 112	0 / 120	단위:개소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종량제 봉투 동판관리, 품질관리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등을 제대로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법령과 지침을 연찬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량제 봉투 제작부터 품질 및 동판관리까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또한 부정유통 여부 확인에 따른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치할 사항

①㉠㉡군 ㉢㉣과는 종량제봉투 제작 시 인쇄원판 출납대장 및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검수시 검수공무원이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부정기적 검체 수거 및 분석을 통해 종량제봉투 품질관리 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종량제봉투 판매소 현황을 지역 주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 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판매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 분 요 구 서(49)

주 의 요 구

감사자 : ㉸㉸㉸

제 목 주거용 도·군유재산 사용료 과소 부과 등

소관기관 ㉸㉸군

조치부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전 및 운용과 처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있다.

「국유재산 시행령법」 제29조에 따르면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사용목적이 주거

용인 경우 사용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사용료의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게 되어있다.

「㉠㉠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사용목적이 주거용인 경우의 사용료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사용료의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게 되어있다.

「지방회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허가나 수납하여야 하며,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에 따르면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훈령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제4조 및 별표1에 따르면 재무과-세입관리-세외수입의 부과징수는 실무 담당자 기안, 담당과장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르면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군 ㉠㉠㉠㉠과는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의 요율(주거용 국유재산 1천분의 20 이상, 주거용 도·군유재산 1천분의 25이상)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매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실무 담당자가 부과결정 공문을 기안하고 담당과장이 결재를 하여 사용료 부과를 결정해야 하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부과내역을 입력하고 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담당자-담당팀장-분임징수관이 결재를 하여 징수결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군 ㉠㉠㉠㉠과는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의 요율(주거용 국유재산 1천분의 20 이상, 주거용 도·군유재산 1천분의 25이상)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매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실무 담당자가 부과결정 공문을 기안하고 담당과장이 결재를 하여 사용료 부과를 결정해야 하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부과내역을 입력하고 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담당자-담당팀장-분임징수관이 결재를 하여 징수결의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군 ㉠㉠㉠㉠과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군 ㉠㉠면 ㉠㉠리 000-00번지 등 총 33건의 주거용 도·군유재산(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사용료 요율 적용시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해야 하나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표1]의 과소부과 내역과 같이 총 240,100원을 적게 부과한 사실이 있다.

[표1]주거용 도·군유재산 사용료 과소부과 내역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비고
잘못 부과한 건수	도유재산 (주거용)	11건 중 3건	12건 중 4건	12건 중 4건	35건 중 11건	155,060원 과소 부과
	군유재산 (주거용)	45건 중 6건	48건 중 8건	56건 중 8건	149건 중 22건	85,040원 과소 부과
◎ 2019~2021년 3년동안 총 33건, 사용료 240,100원을 과소부과						

※ 주거용 도·군유재산의 사용료 산출시 요율을 잘못 적용함.(“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해야 하나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함)

※ 사용료 잘못 부과된 세부내역 : 붙임 참조

또한, 2021년도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의 사용료 부과(‘21.5.5., 252건, 9,305,630원) 시 부과결정에 대한 공문을 작성하지 않고 분임징수관(담당과장)의

결재 없이 사용료 부과를 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부과내역을 입력하여 고지서만을 출력하여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표2] 국·공유재산 사용료(세외수입) 분임징수관 미결재 명세

부과내용	부과건수	부과금액	부과일자	비고
‘21년도 국·공유재산 사용료(정기분)	252건	9,305,630원	‘21.5.5.	내부결재 없이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상 부과처리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국유지의 경우 주거용 요율이 1천분의 20으로 국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어, 공유지(도유, 군유)도 국유재산법에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음. 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㉞㉞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주거용 요율 1천분의 25로 부과하고, 과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부과토록 하겠음.

또한 사용료 부과시 부과결정 공문 작성후 부과하여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조치할 사항

공유재산(도유·군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부과시 주거용 목적인 재산에 대한 사용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시 부과결정 공문을 작성하여 분임징수관(담당과장)의 결재를 받는 등 관련 회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50)

시 정 요 구

감사자 : ○○○○

제 목 치매전담요양시설 건립공사 바닥 콘크리트 균열 발생 등 공사관리 소홀
소관기관 ○○○군
조치부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표》사업 개요

건축물명칭	위치	용도	연면적(㎡)	층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치매전담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군 ○○○읍 ○○○리 00-0	노유자 시설	2,783.86	지상3층	(주)종합 건축사 사무소 ○	(주)○○○○ ○○○ ○○○	(주)○○○○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 지역업체 공동도급 감리 : (주)○○○○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

○○○군 ○○○○○과에서는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건립공사」를 위해 시공자 (주)○○○○○, 감리자 (주)○○○○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1.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일반콘크리트(KCS 14 20 10)」 1.9(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에 따르면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하고, 침하, 수축 및 온도에 의해 발생하는 균열폭은 허용균열폭³⁾ 이내 여야 한다.

3)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이 건조환경이며, 강재의 종류가 철근일 경우 : 0.4mm

또한,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시 고려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진 피복두께를 확보하고 다지기, 양생⁴⁾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KDS 14 20 50)」 4.3(최소 피복 두께)에 따르면 프리스트레싱하지 않는 부재의 현장치기 콘크리트에서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기둥의 최소 피복 두께⁵⁾는 40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유효깊이가 200mm를 초과하는 경우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의 허용오차는 13mm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당 보강토옹벽 상세도에 따르면 옹벽의 전도 방지 및 기초지반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그리드의 너비는 3.6m로 설계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사진1》 공사현장 현지조사 결과(콘크리트타설일 : 22.05.19. / 현장감사일 : 22.05.20.)

<매트기초 상부 균열>	<C4기둥 피복두께 미달>	<보강토옹벽 그리드 훼손>
		
· 균열폭 : 1mm 이상 허용균열폭 0.4mm 초과	· 피복두께 : 24mm 최소피복두께 27mm 미달	· 그리드 너비 : 2.8m 그리드너비 3.6m 미달

① 매트기초 콘크리트 표면 균열 다수 발생

그러나 감독부서인 ㉠㉡군 ㉢㉣㉤과 및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사무소에서는 2022. 5. 19. 매트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1층 바닥의 균열(1mm 이상)이 허용균열폭(0.4mm)을 초과한 상태로 1층 바닥 부분에 넓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콘크리트의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능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4) 콘크리트 타설 후 그 경화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작업

5) 철근콘크리트의 철근 표면에서 이를 피복하는 콘크리트의 두께

② 기둥 철근 최소 피복두께 미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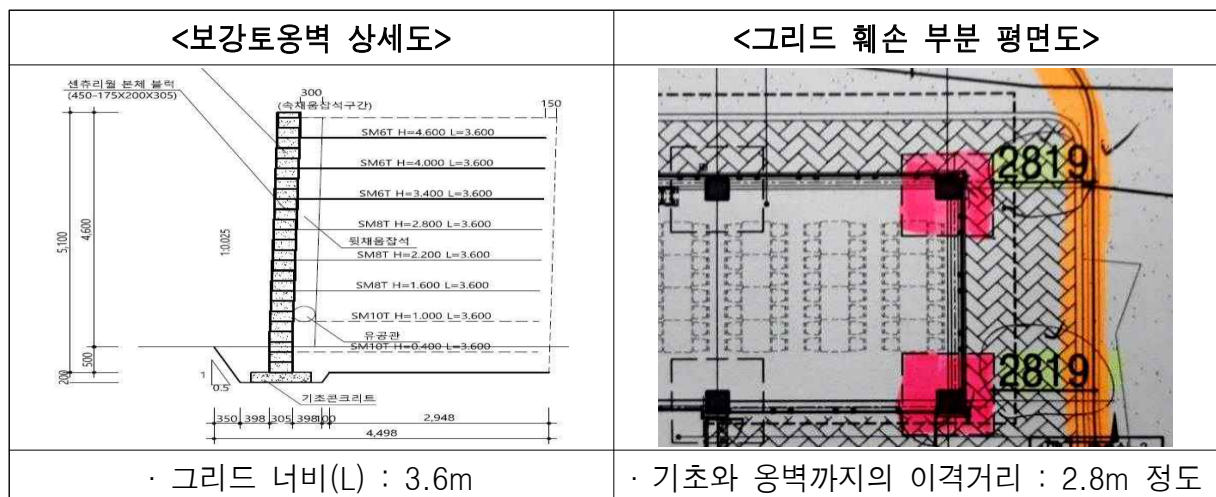
또한, 해당 현장에서 시공중인 C4기둥의 피복두께는 원칙 40mm에서 허용오차 13mm를 제외한 27mm 이상 확보되어야 하나, 현장 실측 결과 24mm로 3mm가 미달되어 있는 상태이다.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나, 콘크리트 타설 후에 상기와 같은 시공 오류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 노력이 없었고,

감리자인 (주)○○○○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상주감리원(소속 : □□)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자에게 '기둥 철근배근 간격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기둥 내 철근의 부식 및 내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③ 보강토옹벽 상부 그리드 훼손

《사진2》 보강토옹벽 관련 도면



그리고 보강토옹벽 상세도에 따른 그리드의 너비는 3.6m로 설계되어 있으나, 건축물 기초와 옹벽의 간격이 좁아(2.8m 정도) 기초와 접하는 부분의 옹벽 그리드를 설치하지 못하고 0.8m 정도 절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그리드의 너비를 고려하지 못한 설계상의 오류로 감리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상세시공도면 및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시공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시공이 어려울 경우 설계변경을 검토하였어야 하나,

감리자인 (주)○○○○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사무소와 감독부서인 ○○○군 ○○○○○과에서는 보강토 옹벽에 대한 감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그리드 훼손을 방치하여 보강토옹벽 구조안전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공사현장 관리 감독 소홀로 시공 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결과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으며, 각 지적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책을 수립하여 보완할 계획임.

① 매트기초 콘크리트 표면 균열 다수 발생

구조기술사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균열은 건조수축으로 구조 안전성에 문제는 없으나 시멘트 모르타르를 활용한 균열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되는 28일 후 강도 시험 등 구조기술사의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적정 조치를 취하겠음.

② 기둥 철근 최소 피복두께 미달

구조기술사의 검토 결과 가장 모서리 쪽의 철근 1대만 미소한 범위로 피복 두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본 구조물의 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구조기술사의 추천에 따라 케미컬앵커를 활용한 보수를 진행할 예정임.

③ 보강토옹벽 상부 그리드 훼손

현재 설계상으로 3번째 단에 3.6m의 그리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옹벽과의 거리가 2.8m로 그리드가 훼손된 부분은 2번째 단에 추가로 그리드를 한 번 더 설치하는 것으로 보수를 진행할 예정임.

또한,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관리 소홀을 인정하며 향후 반복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조치할 사항 ㉠㉠군 ㉡㉡㉡㉡과에서는

① 현장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조속히 보수·보강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향후 공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감독 및 감리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자 (주)㉢㉢㉢㉢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51)

시 정 요 구

감사자 : ○○○○

제 목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소홀
소관기관 ○○○군
조치부서 ●●●●과, ○○○○○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3종시설물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결과 검토, 지정현황 취합 등 3종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총괄부서)하고 있으며, ○○○○○과에서는 3종시설물의 개별 담당 부서(소관부서)로서 소관 시설물에 대한 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3종시설물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시설물안전법 제7조에 따르면 '제3종시설물'이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시설물을 말하며, 동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정기관")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표1> 3종시설물의 범위

구분	대상범위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외)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실태조사)에 따라 지정기관은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에 대한 현황, 안전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지정기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인·허가대장,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정보시스템, 「건축행정 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건축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조사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 지침 제101조(제3종시설물의 지정)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시설의 안전상태,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⁶⁾에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지정기관은 다음 연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기본계획⁷⁾ 및 시행계획⁸⁾을 매년 6월30일까지 수립 하여야 하며, 총괄부서는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표2〉 실태조사 누락 시설물 현황

연번	시설명	위치	용도	연면적(㎡)	준공 년도	소관부서
1	ⓐ대학교 1동	ⓐ군 ⓐ읍 ⓐ리 산00-0 외 56필지	교육연구시설	16,332.91	1994	ⓐⓐⓐ과
2	ⓐ할인마트	ⓐ군 ⓐ읍 ⓐ리 000-0	판매시설	1,267.94	2002	ⓐⓐⓐ과

그러나 ⓐⓐⓐ과 및 ⓐⓐⓐ과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3종시설물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대학교 1동(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및 ⓐ할인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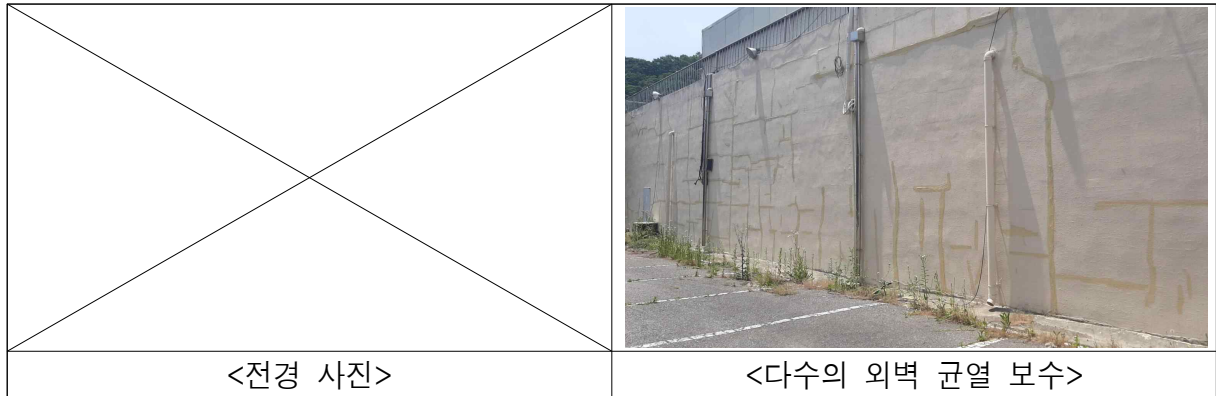
6)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에 관련된 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Facility Management System)

7) 실태조사의 대상시설물 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지정기관 내 총괄부서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추진체계, 조사대상시설물, 조사시기, 예산계획 등을 포함

8) 총괄부서의 기본계획에 따라 실태조사의 실행을 위해 소관부서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대상시설물, 조사반 편성 및 운영, 예산 집행계획, 조치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시설) 건축물을 실태조사 대상에서 누락하여, 안전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누락됨으로 인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으로 적정한 안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사진》 ㉠㉠할인마트 현지조사 결과



감사기간 중 실태점검에서 누락된 시설물을 현지 확인한 결과 준공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할인마트의 경우 건축물 내외부 균열이 다수 발생되어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군 안전건설과 및 ㉠㉠㉠㉠과에서는 제3종시설물의 실태조사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과) “의견없음”

(㉠㉠㉠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에 따라 공동주택외 건축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의 실태조사대상이나, 관련 법령 숙지 미흡으로 인하여 1994년 사용승인된 ㉠㉠군 ㉠㉠읍 ㉠㉠리 산00-0외 56필지 소재 ㉠㉠대학교 1동 교육연구시설 16,332.91㎡에 대하여 2019년 ~ 2021년 제3종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추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2023년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시행계획을 6월30일까지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실태조사 결과 「지정검토」인 경우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 및 관리하여 3종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조치할 사항 ○○○군 ●●●●과 및 ○○○○○과에서는

3종시설물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대학교 1동 및 ○○○할인마트 건축물의 실태점검을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라며, 향후 3종시설물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조사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52)

주 의 요 구

감사자 : ○○○

제 목 (구)●●●●자료전시관 해체공사감리자 배치 소홀
소관기관 ○●군
조치부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표》 건축물 철거 현황

건축물명칭	관리자	위치	용도	연면적 (㎡)	높이 (m)	층수	공사비 (천원)	도급자	감리자
(구)●●●● 자료전시관 (1993년 준공)	○●군	○●군 ○●읍 ○●리 000	문화 및 집회시설	737.5	12	지하 1층, 지상 2층	95,507	●●개발(주)	●●건축사 사무소

《사업추진 현황》

- 2020. 09. 22. 「(구)●●●●자료전시관 철거공사」 감리 계약
※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대표 ○●● / 소재지 : ○●군
- 2020. 09. 29. 「(구)●●●●자료전시관 철거공사」 시공 계약
※ 시공자 : ●●개발(주) / 소재지 : ○●군
- 2020. 10. 28. 건축물 해체허가
- 2020. 11. 03. 해체공사 착수
- 2020. 11. 05. 해체공사감리자 지정(●●건축사사무소 대표 000)
- 2020. 11. 19. 해체공사 완료
- 2020. 12. 16.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처리

○●군 ○○○○○○○과에서는 노후화로 수시 정비가 필요하고 리모델링이 어려운 (구)●●●●자료전시관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시공자 ●●개발(주), 해체공사 감리자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2020. 11. 19. 해체공사를 완료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따르면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에 기술자⁹⁾에게 검토받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해체공사감리자**”란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동법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 ②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 ③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 ④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¹⁰⁾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 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¹¹⁾

한편, 동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따라 도지사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해체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해체공사

9) ①「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②「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10)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록 등)

11) ①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②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③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④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⑤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⑥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감리자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건축물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관리자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1명 이상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사진》 해체공사 현장사진

2020.11.03.	2020.11.04.
	
<건축물 우측부 철거>	<건축물 좌측부 철거>

※ 해체공사 감리일지 및 현장사진 자료 재구성

그러나 ㉠㉠군 ㉠㉠㉠㉠㉠과에서는 「(구)●●●●자료전시관 철거공사」를 추진하면서 ‘20.11.05.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받은 ●●건축사사무소와 지정이전인 ‘20.09.22.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감리자가 배치된 상태로 건축물 해체공사에 착수(‘20.11.03.)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20.11.05.) 전까지 건축물 해체 공정을 완료한 사실이 있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의견없음”

조치할 사항 ㉠㉠군 ㉡㉡㉡㉡㉡㉡과에서는

향후 건축물 해체공사 추진 시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53)

시 정 요 구

감사자 : ○○○○

제 목 ○○○군 ○○○체육센터 건립사업 상주감리 배치 소홀
소관기관 ○○○군
조치부서 ○○○○○소
내 용

1. 업무개요

《표》사업 개요

사업명	위치	공사비 (천원)	계약일 (공사기간)	도급자	공정률	건축개요
○○○군 ○○○체육센터 건립사업 (○○○○○소)	○○○군 ○○○읍 ○○○리 000-0 외 39필지 (대지면적 73,353㎡)	4,411,684	'21.12.17. ('21.12.23. ~ '23.04.16.)	(합)○○○ 건설	0%	운동시설(체육관) 2,980.87㎡ 신축

《사업추진 현황》

- 2021. 11. 23. 「○○○군 ○○○체육센터 건립사업」 집행
- 2021. 12. 23. 공사착수 서류 제출[(합)○○○건설]
- 2022. 01. 06. 공사 일시정지(사유 : 동절기 일시정지)
- 2022. 02. 21. 정지해제
- 2022. 02. 24. 공사 일시정지(사유 : 건축부지 택지조성 미완료)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¹²⁾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건축물과 건축설비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1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 감리 가능

공사관리·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는 등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감리는 건축공사 규모에 따라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대상으로 구분되며, 비상주감리는 공사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상주감리 대상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적용된다.

상주감리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¹³⁾ 1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1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상주감리 대상은 아래와 같다.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 ②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공사
- ③ 아파트 건축공사
- ④ 준다중이용 건축물¹⁴⁾ 건축공사(운동시설 등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제29조의 공용건축물 특례 규정에서는 공사감리에 대한 예외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령의 기준을 예외로 적용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따라서, 건축허가 대상 규모의 건축행위는 착수 전 공사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전체 공사 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했으나, ㉠㉠군 ㉢㉢㉢소 추진중인 「㉠㉠군 ㉡㉡㉡ 체육센터 건립사업」(운동시설 연면적 2,980.87㎡ 신축)은 실 착공은 하지 않았으나, 감리 배치 없이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시공자에게 공사 착수서류를 제출(21. 12. 23.)받는 등 행정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도 상주감리 용역을 시행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13) “건축사보”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등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

14)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른 착수 전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전체공사 기간동안 배치하지 않아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였음.

다만, 본 사업의 현장 여건이 동절기와 건축부지 택지조성 미완료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실제 착수와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에 따른 착공신고 이전임을 감안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빠른 시일 내 상주감리 용역을 발주하여 공사감리 배치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조치할 사항 ㉡㉡군 ㉡㉡㉡소에서는

상주감리자 배치, 착공신고 이행 등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공공사업 추진시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감리자 배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54)

징계 요구

감사자 : ○○○, ○○○, ○○○

제 목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자재·기성
검사 등 공사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 ○○○군
조치부서 ○○○사업소
내 용

1 현 황

- 사 업 명 :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 위 치 : ○○ ○○○군 ○○○면 일원(11개리)
- 사 업 량 : 배수관로 L=19.0km(D50~150mm), 비상연계관로 L=4.0km(D250mm),
급수관로 L=13.9km(D16~80mm), 가압장(펌프2대) 등
- 공사기간 : 2020. 6. 24. ~ 2022. 9. 26.(절대공기 720일)
- 총사업비 : 10,809백만원(토목 7,743(도급 4,926, 관급 2,817), 감리 1,004,
전기 245, 폐기물 1,070, GIS 336, 설계 및 기타경비 411)
- 발주청/시공사/감리단 : ○○○군 ○○○○○○소 / (주)●●건설 / (주)●●●지니어링
- 공 정 율 : 94% (2022년 6월 감사일 현재)

[자재·기성검사 등 진행 현황]

- 2018. 12. 28.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04. 1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0. 06. 24. 공사 착공
- 2020. 09. 04. 하도급 계약 체결(■●●건설(주))
- 2020. 12. 21. 기성검사(1회)
- 2021. 07. 05. 관급자재(주철관 D100mm) 수압시험 시 누수 발견
- 2021. 07. 06. 안전시설물(안전헬스, 경광등 등)에 대한 실정보고
- 2021. 07. 15. 관급자재(주철관 D100mm) 누수구간 재시공
- 2021. 08. 03. 안전시설물(안전헬스, 경광등 등),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 등 설계변경

- 2021. 09. 07. 관급자재(주철관 D100mm) 누수 관련 업무조정 회의
 - 회의결과 : 자재업체에서 제품의 두께 부족으로 인한 하자 인정, 시공사(하도급사)에 2021. 10. 08. 재시공 비용 6,600천원 지급
- 2021. 09. 11. ~ 14. 관급자재(PE관 D63mm) 수압시험 시 누수 2개소 발견
- 2021. 09. 13. ~ 15. 관급자재(PE관 D63mm) 누수구간 재시공
- 2021. 09. 27. 관급자재(PE관 D63mm) 누수 관련 업무조정 회의
 - 회의결과 : 자재업체에서 제품의 하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협의를 통하여 시공사(하도급사)에 2021. 10. 06. 재시공 비용 4,950천원 지급

[언론보도 현황]

- 2021. 08. 30. : “㉠㉠ ㉠㉠면 지방상수도 전환 차질 우려” 보도
(00일보, 000 기자) - 계량기 보호통 관련
- 2022. 04. 21. : “불량관급자재납품, 감리단서 제재 없이 묵인 유착 의혹” 보도
(00일보, 000 기자) - 관급자재로 인한 재시공 관련
- 2022. 04. 24. : “공사 과설계 10억원... 논란 자초” 보도
(00일보, 000 기자) - 기존 상수도관로 미검토 관련

②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관급자재(주철관, PE관) 누수에 따른 재시공 건 조치 미 보고 등 부적절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기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지침 제12조 제4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승인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1항에서는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¹⁾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관계자 회의 등에 참석,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또한, 업무수행지침 제90조 제17항에 따르면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 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군에서는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2020년 6월 22일에 (주)㉠㉠지니어링 000, (주)㉠㉠ 000과(이하 “㉠㉠”) 계약체결²⁾ 하고 2020년 6월 24일에 착수하여 2022년 9월 1일에 용역준공 예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에서는 2021년 7월 15일 주철관 재시공 1건, 2021년 9월 13일과 2021년 9월 15일 PE관 재시공 2건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에 재시공 여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 및 지시 등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재시공하였고,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건기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군에서는 건기법 시행령 별표6. 2. 하의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다.

그리고, 발주처인 ㉠㉠군 ㉠㉠㉠㉠소 공사관리관 지방시설주사보 ㉠㉠(이하 “공사관리관”이라 한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재시공 등 조치한 것을 자재 관련 회의를 2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므로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가 발주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군 ㉠㉠㉠㉠소 공사관리관은 주철관 1개소 및 PE관 2개소 누수 발생 관련하여 2021년 9월 7일과 2021년 9월 27일에 실시한 업무조정 회의에 관련된 내용을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내부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한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확인한 바 「건기법」에서 정한 서식과 다르게 <표1>과 같이 관련기준과 다른 서식을 사용하였으며, PE관 재시공 2건의 원인인 관의 구멍(직경 2~3mm)을 자재검수를 소홀히 하여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합격·불합격의 검사도 없는 서식을 사용함과, 자재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본 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결과가 되었으므로(이후 수압검사 등을 통해 자재검사 실시), ㉠㉠군에서는 건기법 시행령 별표6. 2. 너 및 별표8.

2)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현황 : (주)㉠㉠지니어링 000(70%), (주)㉠㉠ 000(30%) 공동도급 / 계약금액 : 1,004,200천원 / 용역기간 750일

5. 나. 8), 다. 7)의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주요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주요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표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관련법에 따른 양식 미사용

2. 거짓 기성검사 처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지도감독 태만

「건기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39조의3 제5항에는 실정보고에 따른 조치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건기법 시행령」 제59조에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단계별로, 제3항 제3호에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제5호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제6호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제8호 '설계 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제10호 '준공검사'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4호 '기성 및 준공 검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기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

- 제2조 제23호에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지침 제67조의 내용을 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와 현지 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지침의 별표3에 따르면 설계변경에는 발주청 요청(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등이 있다.
-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을 말함)은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7조 제1항 제6호 '기성·준공 검사원'을 시공자가 제출하였을 경우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해당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무수행지침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6항에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3조, 검사자는 해당 공사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 검측한 내용 확인, 지급자재의 사용여부, 기성검사원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전 검토 의견서 등을 준비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의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에서 제출한 기성검사원³⁾ 및 기성검사를 위한 내역서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보완 지시하여야 함에도, 2022년 6월 24일 ㉠의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인 000의 자술서를 보면 ‘현장에서는 ... 중략 ... 기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였으며... / (이하 생략)’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시방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안전시설(라바콘+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지하고도 당초 설계되어 있던 안전시설(A형펜스+윙카)로 기성된 것으로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기법」 제39조의3 제1항 및 제5항,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지 않고, 2020년 12월 21일 실기성금보다 약 92백만원이 더 소요된 것으로 거짓 기성검사⁴⁾를 하여, ㉠군이 과도한 기성금을 지급하게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항목에 대해 감액함

3) 기성검사원(제1회) :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1차), 기성율 40.81% / 제출일 : 2020.12.15.
안전시설(A형펜스+ 윙카)설치 기성내역서 작성 제출 / 제출자 : 시공사 (주)㉠건설

4) 기성부분 검사 : 검사일 2020. 12. 21. / 검사자 (주)㉠지니어링 소속 기술지원기술자 000, (주)㉠ 소속 기술지원기술자 000 / 입회자 ㉠군㉠㉠㉠㉠소 ㉠㉠, 책임감리 000, 현장대리인 000

으로 인해 하도급업체인 (주)■■■건설에서는 부당한 감액이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000의 행위가 전기법 제39조의3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인지와 전기법 제8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발주처인 ㉠㉡군 ○○○○○○소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에서 공사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확인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시설에 대한 기성검사를 부적정하게 하여 시공하지 않은 안전펜스 부분을 거짓으로 기성검사하는 등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3. 기존 매설관(PE관 D75mm) 활용 미 검토 등 지도감독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

-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및 의사결정을 지원·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 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 제120조 제4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020년 11월경 ㉠㉡군 ㉠㉡면 ㉠㉡리 일원의 B-Line 공사 중 D75mm PE관이 기매설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기 매설관로(D75mm)의 활용 방안이나, 설계된 관로(D100mm)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수리 검토를 하지 않는 등 현지 여건 변경에 대한 검토 없이 최초 설계된 대로만

공사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소에서는 2020년 11월경 ○○○군 ○○○면 ○○○리 일원의 B-Line 공사 중 D75mm PE관이 기매설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기 매설관로(D75mm)의 활용 방안이나, 설계된 관로(D100mm)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수리검토를 해볼 것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시하지도 않았고, 자체적으로 검토·보고도 하지 않아 예산 낭비 우려에 대해 파악하지도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감사기간 중 수리검토 결과 D100mm 주철관을 신설하고 기존관은 보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상수도 관망도 미정비 및 기존 관로 활용여부 미 검토 등 설계검토 소홀

○○○군 ○○○○○○소에서는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하 “○○○산단 주변마을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2018년 11월 5일에 집행하였고, (주)○○○지니어링 대표 000과 2018년 12월 27일에 계약체결하고 2018년 12월 28일에 착수하여 2020년 4월 11일에 준공하였다.

가. 상수도 관망도 정비 소홀

○○○군 ◇◇과에서는 2018년 5월 18일 등 2회에 걸쳐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및 준공인가 고시(2018. 8. 31.)를 위해 ○○○○○○소와 산업단지 내 상수도 시설 이관에 따른 협의⁵⁾ 진행 및 시설물 이관을 완료하였다.

이후 ○○○군 ○○○○○○소에서는 ‘○○○산단 주변마을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주)○○○지니어링에 설계용역 기초자료로 상수도 관망도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소에서 제공한 상수도 관망도에는 ◇◇과에서 이관한 상수도 관로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의 관망도가 제공되었다. 이는 2018년 12월 28일 ‘○○○산단 주변마을 설계용역’ 착수 시까지 약 4개월 동안 상수도 관망도를 정비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산업단지 상수도 시설을 ○○○○○○소에서 이관 받은 2018년 8월 31일 이후 약 19개월이 지난 2020년 4월 11일 ‘○○○산단 주변마을 설계용역’이 준공될 때까지도 관망도를 정비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5) 관련문서 : ○○○군 ○○○과 21935(2018.5.18.)호, 6149(2018.8.1.)호 및 ○○○○○○소-4549(2018.5.18.)호, 5211(2018.6.11.)호, 5784(2018.6.26.)호)

나. ㉠㉠산업단지 기설 관로 확인·검토 미실시 등 설계검토 소홀

‘㉠㉠산단 주변마을 설계용역’ 수행사인 (주)㉠㉠㉠지니어링에서는 계약체결 당시 과업지시서 3페이지 3.0 과업의 범위, 3.2 과업의 범위에 ‘본 과업은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조사측량 및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포함한 상위 관련계획과 ㉠㉠군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효과적이고 원활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공사 집행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산업단지 준공도면이 아닌 ㉠㉠산업단지 계획도면과 ㉠㉠산업단지 상수도 관로가 입력되지 않은 관망도만을 가지고 현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과품을 납품하고 준공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계약이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시설주사보(현, 지방시설주사) ㉠㉠㉠을 용역 감독으로 지정(‘20. 3. 1.부터 준공시까지 지방시설주사보 ㉠㉠㉠)하였으나, ㉠㉠㉠㉠소와 용역 감독 ㉠㉠㉠, ㉠㉠㉠은 ㉠㉠산업단지 준공도면을 반영했는지와 용역사의 현지조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수정되지 않은 상수도 관망도를 제공하는 등 용역 감독 및 설계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2022년 4월 24일 ‘공사 과설계 10억원.. 논란 자초 - ㉠㉠일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검측소홀 및 현장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변경 지도감독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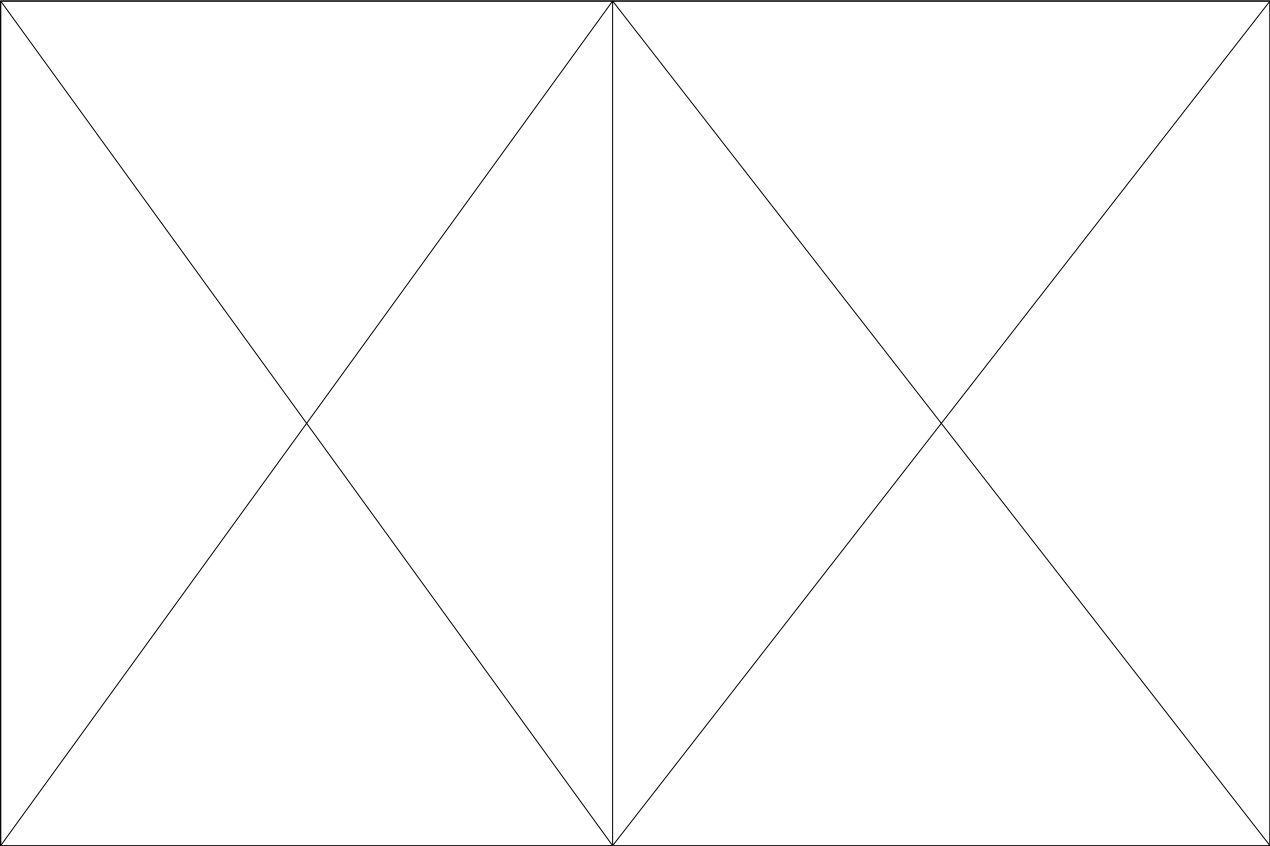
「건기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

- 제4조 제1항 제2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2항 제6호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호 ' "시공자"는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품질과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49조 제1항 제6호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 제56조 제10항 제4호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제12항 제2호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등 검측과 관련하여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간의 업무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21년 5월 27일 본 공사 ○○○리 일부 구간(G라인 No.6 + 33.0 ~ No.10 + 5.0)에 대하여는 본 사업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사간의 검측요청서, 체크리스트 및 2022년 6월 17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 해당구간 기초 터파기 계획고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 전에 하도급업체에서 공기변실(기성 맨홀)을 안착되었음을 확인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맨홀의 높이를 맞추라고 지시하여 재 작업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하도급업체인 (주)■■■건설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측요청을 무시하여 발생한 일이었음을 주장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부적절한 업무행태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이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 사용한 검측요청서에 검측 요구 일시를 작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모든 검측요청서에 시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

<표2> 현장에서 사용한 검측요청서 및 검측 사진

	
검측요청서 : 시간이 누락되어 있음	○○리 암검측, 공기변실 검측

또한, ○○리 일부 구간(B라인 No.42 + 24.0 ~ No.49 + 4.0, No.50 + 19.0 ~ No.55 + 15.0)에 대한 설계변경 자료를 검토한 바, 현장에 있던 되메우기 흙의 상태가 좋지 않아 굴삭기를 이용하여 되메우기 흙에 섞여 있는 골재 등을 선별하여 사용한 것으로 실제 현장 여건에 부합한 설계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했어야 함에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구간에 대해 일반 토사 되메우기 단가로 적용하여 약 1,540천원⁶⁾에 해당하는 공사비(제경비 포함)에 대한 설계변경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하도급사에서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소와 공사관리관인 ●●●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하도급사 간에 검측,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공사 추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이견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도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진행되도록 지도·점검하지 않았고,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공사관리관, 담당 팀장, 소장의 문답 결과 감독 소홀 등을 인정하고 있다.

6) 일반 토사 되메우기 시 2,320천원, 굴삭기 효율 등 최악의 조건 적용 시(채버킷 단가 없음) 3,860천원 ⇒ 1,540천원 중(제경비 적용) / 토공량은 약281m³ 정도임

6.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 감액 관련 설계 검토 소홀

「수도법」 제3조에 따르면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하며,

「수도법」 제70조, 「㉟㉟군 수도급수 조례」 제12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및 「상수도설계기준」에 따르면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과는 구분되며,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㉟㉟군 수도급수 조례」 제13조(급수공사비 산출방법)에 따라 ㉟㉟군 ㉟㉟㉟소에서는 매년 수요자가 부담하는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에 계량기 보호통이 포함된 비용을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㉟㉟군 ㉟㉟㉟㉟소에서는 “㉟㉟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 수요자가 부담하는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 설치분(337개소, 65백만원)은 설계내역에서 제외되었어야 하나, 포함된 상태로 용역 준공 및 설계서를 납품받아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공사 착공(2020. 6. 24.) 후 13개월 이상이 경과한 전체분 1회 변경(2021. 8. 3.) 시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던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 설치 감액분을 보고내역에서 제외하고 실정보고를 하는 등 설계서 검토를 소홀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하도급 업체가 공사 금액 감액에 반발하는 등 민원의 원인이 되었다.

7. 직무 관련자와 저녁 식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7)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르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같은 법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제2항 제4호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공사관리관)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군 ㉢㉢㉢㉢소에서는 2020년 가을 경 1회, 2022년 6월 8일에 1회 등 총 2회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소장 등 직무관련자와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0000, 현장소장 000도 자술서(확인서)로 인정하였으며,

2021년 8월에 한 번, 2022년 4월에 두 번 등 총 3회의 언론 보도 중 특히 2022년 4월 두 번의 언론보도 내용이 ‘불량관급자재납품, 감리단서 제재 없이 묵인 유착 의혹’, ‘공사 과설계 10억원... 논란 자초’ 등으로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2달 정도 후인 2022년 6월 8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소장에게 저녁식사를 대접 받는 등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

가. 1회 : 2020년 가을 경 저녁으로 8명(㉠㉠군 ㉢㉢㉢㉢소 ◇◇◇◇팀 팀장 시 설6급 ㉢㉢, 시 설7급 ㉢㉢㉢, 시 설7급 ㉢㉢㉢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000, 000, 원청 현장소장 000 등 3명)이 ㉠㉠가든에서 오리백숙과 소주를 먹음. 비용은 현장소장 000가 제공(현장소장 000의 진술에 따르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만원 정도라 함(1인당 2.5만원×8명))

나. 2회 : 2022년 6월 8일 저녁, ㉢㉢㉢㉢소장 ㉢㉢㉢이 가자고 하여 저녁으로 10명(㉠㉠군 ㉢㉢㉢㉢소 소장 시 설5급 ㉢㉢㉢, ◇◇◇◇팀 팀장 시 설6급 ㉢㉢㉢, 담당자 시 설7급 ㉢㉢㉢, 기계운영6급 ㉢㉢㉢, 기계운영6급 ㉢㉢㉢, 시 설8급 ㉢㉢㉢, 공업8급 ◇◇◇, 시 설9급 ㉢㉢㉢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000, 현장소장 000)이 ㉢㉢식당에서 삼겹살과 소주, 맥주를 먹음. 비용은 현장 소장 000가 제공(현장소장 000의 진술에 따르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4만원 정도라 함(1인당 2.4만원×10명))

신분상처분

1. 대상자	① ○○○○○소	지방시설사무관	▣▣▣▣
	② ⊕⊕⊕⊕과(前 ○○○○○소)	지방시설주사	▣▣ ▣▣
	③ ○○○○○소	지방시설주사	▣▣▣▣
	④ ○○○○○소	지방시설주사보	●●●
	⑤ ○○○○○소	지방시설주사보	▨▨▨
	⑥ ○○○○○소	지방기계운영주사	▨▨▨
	⑦ ○○○○○소	지방기계운영주사	▣▣▣
	⑧ ○○○○○소	지방시설서기	◆◆◆
	⑨ ○○○○○소	지방공업서기	◇◇◇
	⑩ ○○○○○소	지방시설서기보	◆◆◆
	⑪ ●●면(前 ○○○○○소)	지방시설주사	▣▣▣

2. 종 류 ① ~ ④ 경징계, ⑤ ~ ⑪ 훈계

조치할 사항

- ①①군은 “①①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의 지도·감독 및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향응을 제공 받은 ▣▣▣▣, ▣▣, ▣▣▣▣,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및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과금’ 부과결 요구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위 향응 제공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1조의 적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망도 미정비 및 설계용역 감독을 소홀히 한 지방시설주사 ▣▣▣과 수수 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 등을 하지 않은 ▨▨▨, ▨▨▨, ▣▣▣, ◆◆◆, ◇◇◇, ◆◆◆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40조, 제53조,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8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별표8 등의 적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①①군에서는 설계변경 시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등에 따라 정당한 대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